

2016年 學術發表會

東洋古典 翻譯의 未來를 위한 提言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사)전통문화연구회
후원 : 한국고전번역원 / (사)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모시는 글

〈秋聲賦〉에서 가을이 오는 소리를 실감나게 묘사했던 歐陽脩는 가을을 刑官이라 표현했습니다. 한 해의 豐凶이 가을에 결정되듯, 올 한 해 본회의 사업들도 어느덧 結實을 평가받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올 해는 ‘東洋古典 翻譯의 未來를 위한 提言’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본회는 그동안 동양문화의 寶庫인 古典을 대중과 공유하는 일에 매진해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韓國學과 東洋學 발전에 礎石이 되는 東洋古典譯註事業의 장기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의 完譯을 기념하여 구양수의 삶을 조명하고 그의 문장을 통해 그가 강조한 古文의 眞面目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동양고전콘텐츠의 활용방안과 발전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昨今の 亡國的 語文政策에 대한 토론을 겸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聲援과 關心 부탁드립니다.

2016년 11월 일

전 통 문 화 연 구 회

상임고문 李漢東
이사장 趙富英
회장 李啓晁

□ 행사 일정 □

• 사회 : 金慶浩(성균관대 교수)

◆ 국민의례

◆ 개회사 14:10~14:25

| 李啓晷(본회 회장)

◆ 축사 14:25~14:35

| 安炳周(성균관대 명예교수)

◆ 出版기념식 《唐宋八大家文抄 歐陽脩》[全4冊] 14:35~14:50

책임번역 : 李相夏(한국고전번역원 교수)

공동번역 : 權憲俊(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邊球鎰(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李承炫(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 주제발표 14:50~17:00

• 東洋古典譯註叢書 刊行的 回顧와 展望 |

辛承云(성균관대 명예교수)7

• 朝鮮朝 漢文에 끼친 歐陽脩의 影響 |

李相夏(한국고전번역원 교수)9

• 東洋古典情報의 콘텐츠화 摸索 |

崔熙洙(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25

• 漢字와 漢字語의 保存을 위한 憲法的 辯論 |

金汶熙(변호사, 前 憲法裁判官) /

李仁皓(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43

◆ 폐회 및 다과회 17:00

東洋古典譯註叢書 刊行의 回顧와 展望

辛 承 云(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別紙》

朝鮮朝 漢文에 끼친 歐陽脩의 影響

李相夏(한국고전번역원 교수)

1. 한문의 특성과 唐宋八大家
2. 歐陽脩와 그의 문학
3. 조선조 문학에 끼친 영향
4. 맺음말

1. 한문의 특성과 당송팔대가

한문은 어떠한 글인가?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文으로서의 한문과 語로서의 백화가 함께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백화문과 한문(古文)이 뚜렷이 구분되며, 중국 사람들도 고문은 따로 배워야 알 수 있다. 같은 한자로 이루어진 글이고 문법도 기본원리는 같은데도 중국 사람이 한문을 잘 알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대체로 다른 외국어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든 문법을 익히고 단어·숙어를 외고 이것저것 많은 문장을 읽는 것으로 습득할 수 있지만 한문은 기본교재를 충실히 읽지 않고는 제대로 습득할 수 없다. 예컨대 아무리 총명한 사람 일지라도 古文인 四書를 읽지 않고 사서의 문장을 인용, 응용한 구절의 뜻을 알 수는 없으며, 五經·史記·諸子書 등 기타 원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원전들의 글은 글마다 그 글 특유의 문법이 있고 고사가 있어 註釋을 통하여 그 원문을 읽지 않고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즉 한문에는 이를테면 基本書類라 할 글이 많기 때문에 讀習의 과정을 정확히 밟아서 공부하지 않고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어렵다.

한문은 典據가 특히 많은 글이다. 한문의 전거는 원래의 구절 그대로 문장에 인용되기도 하지만 다른 문맥 속에서 적절하게 용해, 변용되어 쓰이는 곳이 많다.

그래서 전거에서 고사를 찾는 것도 어렵거니와 더욱 알기 어렵고 검색하기 어려운 것은 글자나 단어의 뜻, 또는 문법의 근거가 되는 원전의 용례이다. 다른 외국어와 비교해서 두드러지는 한문의 특징은 미리 읽어야 할 원전이 많다는 점일 것이다. 문리도 층차가 많아

四書는 사서의 문리가 있고 五經·諸子書·史記 등은 그 나름의 문리가 있으며, 후세에 많이 읽힌 저명한 문인·학자들의 저술도 또한 그 나름의 문장의 體例·전거를 가지고서 그 후세에 원전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따라서 원전의 글들을 알지 못하면 그 원문을 인용 또는 응용해서 쓴 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니, 한문에서는 그 많은 원전 전체가 典據로 쓰여 熟語集이요 用例集이 되는 셈이다. 그만큼 必讀書가 되는 원전 폭이 매우 넓은 것이다. 한문의 작자는 글을 쓸 때 자신이 인용, 응용한 원전을 밝히지 않고 쓰기 때문에 한문 문리가 웬만큼 깊어도, 검색 기능을 아무리 잘 활용해도 타인이 쓴 글을 다 알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문 문리에 맞게 잘 번역한 것을 한문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현대어 감각에 어색하다고 느껴 잘못 고치는 改惡도 심심찮게 발견되곤 한다. 唐宋八大家의 글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할 원전이다.

唐나라 때 韓愈와 柳宗元은 六朝시대 이후 내용이 없고 화려한 사료문에 반대하여 秦漢 이전의 고문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 儒家사상을 바탕으로 한 간결하고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문장을 지었다. 이것이 이른바 古文運動이다. 그러나 한유와 유종원이 세상을 떠나자 고문운동은 기세가 약해지고 그 반동으로 당나라 말기부터 다시 육조시대와 같은 유풍적인 변려문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北宋 때에 와서 歐陽脩가 한유의 문장을 전범으로 삼아서 알기 쉽고 유려한 문장을 지었고, 그 영향 아래에 蘇洵, 蘇軾, 曾鞏, 王安石 등 뛰어난 문장가가 출현하였다. 이들이 이른바 唐宋八大家이다.

당송팔대가란 명칭은 송나라 西山 眞德秀가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 뒤를 이어 唐順之가 팔대가의 문장을 선집하여 《文編》을 편찬했으며, 明나라 茅坤이 《唐宋八大家文抄》 164권을 편찬하였다.

茅坤(1512~1601)은 古文에 조예가 깊었고 司馬遷과 歐陽脩의 문장을 특히 좋아하였다. 그는 擬古派라 불리는 明나라 때 前後七子들의 ‘文必秦漢論’에 반대하여 王慎中·唐順之·歸有光 등과 더불어 唐宋의 古文을 배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文學史에서 이들을 明代의 唐宋派라 일컫는다. 이들을 포함하여 주자학적 지향이 비교적 강했던 明初의 方孝孺, 宋濂 등을 韓歐正脈이라 일컬으며 그 흐름은 清代의 方苞, 姚鼐 등으로 이어진다.

茅坤이 엮은 《唐宋八大家文抄》는 모두 164권인데 《韓愈文抄》 16권, 《柳宗元文抄》 12권, 《歐陽脩文抄》 33권, 《蘇洵文抄》 10권, 《蘇軾文抄》 28권, 《蘇轍文抄》 20권, 《曾鞏文抄》 10권, 《王安石文抄》 20권이다. 이 《唐宋八大家文抄》에는 각 작가의 文抄마다 목록 앞에 서문과 작가의 傳을 실어 놓아 작가의 문학세계와 생애의 대강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각 작품마다 제목 아래 編者인 모곤 자신의 評語를 달아 놓아 그 작품의 문학

적 특징과 요점을 알 수 있게 해 놓았다. 이 책은 실제로 唐宋八大家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淸나라 때 桐城派가 편찬한 《古文約選》, 《古文辭類纂》 등도 이 책을 저본으로 삼았다.

《唐宋八大家文抄》는 明나라 萬曆 연간에 杭州에서 처음 간행되었다. 그 후에 茅坤의 손자인 茅著가 〈五代史抄〉와 〈新唐書抄〉를 추가하고 訂正하여 崇禎 연간(1631)에 간행한 重刊本이 세상에 유통되었다.

이 책이 간행된 뒤에도 淸나라 때 儲欣의 《唐宋十大家全集錄》, 沈德潛 《唐宋八家文讀本》 등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유행한 것은 이 《唐宋八大家文抄》이다. 조선시대에 正祖가 이 책을 다시 정선해 《唐宋八家百選》을 편찬하여 문장의 전범으로 삼게 하였고, 일본에서 간행된 《漢文大系》에 실린 沈德潛의 《唐宋八家文讀本》도 이 책을 저본으로 삼은 것이다.

2. 구양수와 그의 문학

歐陽脩(1007년~1072년)는 吉州 廬陵 사람으로 자가 永叔, 호가 醉翁이며 만년에는 六一居士라는 자호를 썼다.

10세 무렵 구양수는 《昌黎先生文集》 6권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아 古文에 뜻을 두게 되었다.

天聖 8년(1030), 24세 때 구양수는 정월에 禮部試(進士試)에 수석으로 급제하였고 3월에는 崇政殿 御試에서 甲科 14等으로 합격하여 將仕郎·試秘書省校書郎·西京留守推官에 임명되었다. 그 이듬 해 낙양에 부임한 구양수는 尹洙, 梅堯臣 등과 사귀며 고문과 시가를 지어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스승 胥偃의 딸과 결혼한다. 이때부터 구양수는 본격적으로 古文에 깊이 빠져들었다.

景祐 3년인 1036년에 范仲淹이 呂夷簡에게 국정의 폐단을 지적하였다가 朋黨으로 지목당해 饒州로 좌천당하였다. 당시 尹洙 등은 글을 올려 범중엄을 구하려 노력하다가 함께 좌천당하였는데, 정작 知諫院으로 있던 高若訥만은 간언을 올리지 않았고 도리어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구양수가 〈與高司諫書〉란 편지를 보내어 인간의 염치도 모르는 자라고 꾸짖었다가 夷陵縣令으로 좌천당하였다.

이 시기에 거의 1,000년에 이르는 정치적 혼란시대를 다룬 역사서인 《五代史記》를 저

술했다. 이 책에서 그는 엄격하고 공정한 史觀에 입각하여 정치적 소외세력인 순교자, 반란자, 매국노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기술하였으니, 이는 종전에는 없었던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康定 1년(1040), 34세 때 구양수는 다시 館閣校勘을 맡아서 《崇文總目》을 편수하였고 太子中允으로 전임되었다. 35세 때 《송문총목》을 완성하고 集賢校理로 전임되었다.

仁宗 慶曆 2년 4월에 知禮院이 되어 시대의 폐단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고 外任을 자청, 滑州通判이 되었다.

경력 3년(1043년), 37세 때 仁宗이 言路를 넓히기 위해 諫官의 수를 늘리면서 구양수 등을 知諫院으로 삼고 余靖을 右正言으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 4월에 구양수는 수도인 開封으로 돌아왔다. 오래지 않아 구양수는 同修起居注에 임명되었고, 불과 한 달만에 右正言·知制誥에 임명되었다.

呂夷簡이 재상을 그만두고 간신인 夏竦이 樞密使가 되었는데, 다시 추밀사를 빼앗아 杜衍에게 임명하고, 富弼·韓琦·范仲淹 등을 선발해 임용하였다. 이에 강직한 학자인 石介가 〈慶曆聖德詩〉를 지어서 간사한 자를 물리치기 쉽지 않고 어진 이를 등용하기 어려움을 말하면서 은근히 하송을 지목하자 하송이 노하여 자기편들과 합세하여 黨論을 조작, 범중엄·두연·한기 및 구양수를 지목하여 黨人이라 하였다. 구양수가 이에 유명한 〈朋黨論〉을 지어 인종에게 올렸다. 그의 나이 39세 때의 일이다.

이로부터 구양수는 반대편의 비방과 공격을 받게 되었다. 景祐 2년(1035)에 구양수의 妹夫 張龜正이 세상을 떠나자 구양수의 누이가 어린 딸을 데리고 구양수에게 와서 의지하였다. 10년 뒤인 慶曆 5년(1045)에 어떤 사람이 장귀정의 재산으로 전답을 사서 구양수의 문서로 만들어놓고, 구양수를 지목하여 재물을 탐내어 의리를 배신하였다고 誣告하였다. 이른바 ‘歐陽脩外甥女張氏案’이라는 사건인데, 이로 말미암아 구양수는 知制誥·知滁州로 좌천되었다. 滁州에 있으면서 유명한 〈醉翁亭記〉를 지었다. 이때부터 醉翁이란 호를 쓰기 시작했다.

인종 至和 2년(1055), 구양수는 49세로 知蔡州·右諫議大夫가 되었고, 이듬해 樂安郡開國侯에 봉해졌다. 그 이듬해 51세 때 權知禮部貢舉·禮部侍郎·三班院判官에 제수되어 조정에 들어왔다. 이미 景祐(1034~1037) 연간부터 구양수는 尹洙와 함께 고문을 주창하였는데, 이 시기에 천하의 학자들에게 古文에 가까운 글을 지으라는 조칙이 내렸다. 그리하여 선비들이 모두 고문을 짓게 되었고, 구양수는 드디어 천하 문장의 宗匠이 되었다. 과거시험의 위원장격인 權知貢舉로 있을 때 당시 문풍의 폐단을 깊이 염려하여 이전에 괴벽한 문장

을 지어 과거에 급제한 자들을 거의 다 축출하고 평담하고 典要한 문장을 추구하여 文風이 크게 바뀌었다.¹⁾ 이 때 구양수가 발탁한 인재는 蘇軾, 蘇轍 형제와 曾鞏 등이 있고, 蘇洵 · 王安石 등을 조정에 천거하기도 하였다.

神宗 熙寧 3년(1070), 64세 때 知蔡州로 자리를 옮겼다. 이때부터 六一居士란 호를 썼다. 그 이듬해 觀文殿學士 · 太子少師로 致仕하고, 자신이 그토록 노년을 보내고자 했던 潁州로 돌아왔다. 熙寧 5년(1072), 7월에 장남 發 등과 함께 자신의 문집인 《六一居士集》을 編定하고 그 달에 세상을 떠났다. 太子太師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文忠이다.

구양수의 생애를 압축하면 宋代 문학에 古文을 다시 도입하고 유교의 원리를 통해 政界를 개혁하고자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장려하여 키워 준 王安石의 新法 중 농민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靑苗法을 반대하였고, 유교의 원리에 입각하여 당시의 정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들을 적극 추천했다. 그는 韓愈의 抑佛政策을 지지했으나 한유보다는 온건한 입장이었다.

이 밖에도 역사가로서 구양수는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新五代史》를 편찬하고, 조정에 돌아와서는 宋祁 등과 함께 《新唐書》를 편찬하였다. 금석문 수집을 좋아하여, 《集古錄》을 정리하여 사료 편찬에 금석문의 활용하였으며, 화가로서는 새로운 文人畫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그가 남긴 저서는 역사서 외에도 도합 150권이 넘으며, 그의 서재는 1만 권이 넘는 책과 고대의 문학 유품 및 고고학 자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구양수는 거의 모든 문학 장르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지만 그래도 그의 특장은 산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양수의 문학은 산문에서는 韓愈를 계승하여 宋代에 고문운동을 부활시켰고 시에서는 형식에 치우치고 섬약한 西崑體의 風格을 지양하고 宋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唐宋八大家文抄》의 편자 모곤은 서문에서 구양수의 문학을 이렇게 논평하였다.

西漢 이래로 太史公 司馬遷만을 유독 일컫는 것은 그 문장이 거침없이 치닫고 비분해 오열하듯 하여 정신을 쏟는 곳에 왕왕 문장을 엮고 서술함에 있어 오묘한 경지를 홀로 얻었기 때문이니, 비유하자면 瀟湘, 洞庭湖 가에서 仙姬를 만났을 때 멀리서 볼 수는 있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것과 같다. 수백 년이 지나서 韓昌黎가 나타났으나 그는 문호를 따로 열었다. 그리고 또 삼백 년이 지나

1) 《唐宋八大家文抄》〈廬陵本傳〉, “權知貢舉, 文士以新奇相尚, 文體大壞. 修深革其弊, 前以怪僻在高第者, 黜之幾盡, 務求平淡典要. 士人初怨, 怒罵譏中, 稍信服, 已而文格變而復正.”

歐陽子가 나타났다. 내가 그가 당대의 將相·학사·대부 등의 墓誌·碑表를 찬술한 것과 《五代史》에서 梁·唐의 두 시대의 紀 및 기타 명신의 雜傳 등을 읽어보았더니, 태사공과 거의 高下를 겨룰 만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구양자가 벗에게 보내 글을 논한 편지에서는 이러한 글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또 奏疏와 劄子 같은 글들은 잘 자신의 뜻을 개진하여 利害를 분별하여 오로지 임금을 感悟시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漢나라에서는 鼂錯·賈誼에 비길 만하고 唐나라에서는 魏徵·陸贄에 비길 만하다. 宋나라 仁宗이 일찍이 말하기를 “구양수처럼 뛰어난 사람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한 것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序·記, 書·論 같은 글들도 비록 昌黎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으나 그 자체가 거침없이 나와 특유의 운치와 文瀾을 이루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一唱三歎에 여운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내가 그래서 그의 글을 유독 좋아하여 망령되어 생각하기를 “세상의 문인 학사들 중 태사공의 뛰어난 경지를 얻은 이는 오직 歐陽子 한 사람 뿐이다.” 하였던 것이다.²⁾

구양수의 문장을 司馬遷에 비긴 것은 문장가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 없다.

구양수는 산문 뿐 아니라 詩·賦·詞 등 모든 문학 장르에 모두 능하였지만 여기서는 주로 이 책과 관련하여 산문의 특색에 대해 서술하겠다. 구양수의 작품은 송나라 周必大가 편집하여 《歐陽文忠公全集》으로 간행하였는데, 산문은 대략 5백 편에 가깝다. 이에 대한 諸家の 논평을 소개한다.

먼저 蘇洵은 구양수에게 올린 편지에서,

집사의 문장은 여유롭고 曲盡하여 왕복하여 백 구비로 꺾여도 조리가 시원스러워 간단이 없으며 기운이 다하고 말이 극도에 이르러 말을 급하게 하고 의론을 남김없이 다할 때에도 느긋하고 한가로워 어렵게 글을 쓰느라 고생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집사의 문장은 孟子·韓子の 문장이 아니고 歐陽子の 문장입니다.³⁾

2) “西京以來，獨稱太史公遷，以其馳驟跌宕，悲慨嗚咽，而風神所注，往往於點綴指次，獨得妙解，譬之覽仙姬於瀟湘洞庭之上，可望而不可近者。累數百年而得韓昌黎，然後固別開門戶也。又三百年而得歐陽子，予覽其所序次當世將相學士大夫墓誌碑表與五代史所爲梁唐二紀及他名臣雜傳，蓋與太史公略相上下者。然歐陽子所與友人論文書，絕不之及，何也？又如奏疏劄子，當其善爲開陳，分別利害，一切感悟主上，於漢可方晁錯賈誼，於唐可方魏徵陸贄。宋仁廟嘗諭庭臣曰‘歐陽修，何處得來？’殆亦由此。序記書論，雖多得之昌黎，而其姿態橫生，別爲韻折，令人讀之，一唱三歎，餘音不絕。予所以獨愛其文，妄謂‘世之文人學士得太史公之逸者，獨歐陽子一人而已。’”

하였고, 그의 아들 蘇轍은,

공은 문장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이 넉넉하여 상세하고 간략함이 법도에 맞았고 조용하게 변화하여 聲色을 크게 과장하지 않는데도 이치가 절로 通暢하여 짧은 글이든 큰 논변이든 짓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⁴⁾

하였다. 그리고 蘇軾은,

구양자는 大道를 논하는 것은 韓愈와 같고 일을 논하는 것은 陸贄와 같고 일을 기록하는 것은 司馬遷과 같고 詩賦는 李白과 같으니, 이는 내 말이 아니라 천하 사람들의 말이다.⁵⁾

하였으니, 여러 大家들의 장점을 集大成했다고 극찬한 것이다. 또한 소식은 “구양자는 오늘날의 韓愈이다.” 하였다. 이 밖에도 구양수의 문장에 대해 논평한 글들을 보면 대체로 문장이 자연스럽고 조리가 통창하며 모든 문체에 두루 능하고 하였다. 구양수의 산문은 대개 議論 쪽은 浩蕩하고 雄健하며 격조가 높고 기세가 세찬 반면, 서정 쪽은 감정이 풍부하고 音韻이 그윽하고 맑다고 한다. 이에 대해 曾鞏은 “인위적인 법도를 제거하여 다듬은 흔적 없이 자연스럽다.[絕去刀尺 渾然天成]” 하였고, 韓琦는 “자연스럽게 얻어서[得之自然]”, “다듬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不見痕迹]” 하였다.⁶⁾

구양수 산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曾鞏과 蘇軾이다. 曾鞏의 문장은 風格에서 구양수와 매우 흡사하다. 嘉祐 2년 知貢舉로 있으면서 구양수는 소식의 〈上梅直講書〉를 읽고 감탄하여 “소식의 서찰을 읽으며 나도 모르게 땀을 났다. 통쾌하고 통쾌하다! 이 늙은이가 그에게 한 걸음을 양보해 길을 비켜주어야겠다. 기쁘고 기쁘다.”⁷⁾ 하였다.

구양수는 한유를 계승하여 文을 통하여 道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경전 공부를 중시하였고, 경전을 통해 도를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 구양수는 문

3) 《古文眞寶》 後集 7권 〈上歐陽內翰書〉, “執事之文 紆餘委備, 往復百折, 而條達疎暢, 無所間斷, 氣盡語極, 急言竭論, 而容與間易, 無艱難勞苦之態. …執事之文, 非孟子韓子之文, 而歐陽子之文也.”

4) 蘇轍 《欒城集》(四庫全書本) 後集 23권 〈歐陽文忠公墓道碑〉, “公之於文, 天材有餘, 豐約中度, 雍容俯仰, 不大聲色, 而義理自勝, 短章大論, 施無不可.”

5) 《古文眞寶》 後集 8권 〈六一居士集序〉, “歐陽子論大道似韓愈, 論事似陸贄, 記事似司馬遷, 詩賦似李白. 此非余言也, 天下之言也.”

6) 歐陽脩 《文忠集》(四庫全書本) 附錄 3권, 〈墓碣銘 并序〉.

7) 上同書 149권 〈與梅聖俞書〉, “讀軾書, 不覺汗出, 快哉快哉! 老夫當避路放他出一頭地也. 可喜可喜.”

학 공부에도 매우 심혈을 기울였으며, 문장을 지을 때 修辭를 매우 중시하여 반복해 고치고 다듬었다. 〈醉翁亭記〉는 구양수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인구에 회자되는 뛰어난 작품이다. 이 글에 구양수는 23개의 ‘而’자, 21개의 ‘也’자, 18개의 ‘者’자, 14개의 ‘之’자를 써서 독특한 문장을 구사한 것이 큰 특색이다. 朱子가 어떤 사람에게 이 〈취옹정기〉 원고를 구입하였는데, 첫 구절에서 滁州는 사면에 산이 있다는 말을 수십 자로 표현하다가 마지막에 “環滁皆山也” 다섯 자로 압축했다고 한다.

그는 문장을 지움에 있어 三多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많이 보고 많이 짓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⁸⁾ 그는 또 “나의 평생 문장은 三上에서 지은 것이 많으니, 말 위와 베개 위와 측간 위에서이다.”⁹⁾ 하였다.

위에서 언급했거니와 구양수는 문장에서 平淡하고 典要함을 추구하였는데 이는 韓愈의 문장을 배운 결과이다. 그리하여 그의 문장은 간결하고 평이하며 자연스럽게 논리적이다. 그는 자신이 문학에 대가일 뿐 아니라 知貢舉, 樞密副使, 參知政事 등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蘇洵, 蘇軾, 蘇轍, 曾鞏, 王安石 등을 이끌어서 宋代에 古文運動을 주도한 문단의 맹주였다는 점에서도 문학사에 높이 평가되고 있다.

끝으로 구양수의 글 중 널리 알려진 명문을 살펴보자.

〈上范司諫書〉는 韓愈의 〈爭臣論〉에 비견되는 명문이다. 구양수의 論 중에서는 〈本論〉, 〈朋黨論〉, 〈縱囚論〉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本論〉은 韓愈의 〈原道〉의 취지를 이은 것으로 上·中·下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개략은 정치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五事, 즉 財用을 풍족하게 하는 것, 병력을 강화하는 것,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 인재를 임용하는 것, 명문을 높이는 것을 중시하고, 禮義로 夷狄을 진압해야 하며, 불교를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朋黨論〉에서는 붕당은 군자와 소인 두 가지가 있는데 소인은 이익을 위해 붕당을 만들기 때문에 이익이 다하면 교제가 멀어지므로 거짓 붕당이고, 군자는 道義를 지키고 忠信을 실천하므로 참된 붕당이라 하였다. 따라서 군주는 군자의 참된 붕당을 장려하고 소인의 거짓 붕당은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縱囚論〉에서는 唐太宗이 자신의 德治를 과장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을 속인 것이라고 하였다. 즉 唐太宗이 사형수 390명을 모두 풀어주고 기한 안에 와서 사형을 받게 했는데 한 명도 도망친 자 없이 기한 안에 돌아오자 태종이 사형수들을 모두 사면했다는 것에 대해 이러한 일은 군자도 하기 어려운데 소인이 했다고 하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8) 陳師道 《後山集》 23권 〈詩話〉, “永叔謂爲文有三多, 看多, 做多, 商量多也.”

9) 《文忠集》 127권 〈歸田錄〉, “余平生所作文章, 多在三上, 乃馬上枕上廁上也.”

史論 중에는 〈五代史伶官傳論〉이 유명하다.

그 밖에는 〈梅聖俞詩集序〉, 〈釋秘演詩集序〉, 〈送徐無黨南歸序〉, 〈六一居士傳〉, 〈相州晝錦堂記〉, 〈豐樂亭記〉, 〈醉翁亭記〉, 〈秋聲賦〉 등이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다. 〈梅聖俞詩集序〉에서 “대개로 세상에 전해지는 시들은 대부분이 옛날 곤궁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대개 곤궁할수록 시가 더욱 좋아지는 것이니, 그렇다면 시가 사람을 곤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곤궁한 사람이라야만 시가 좋아지는 것이다.[蓋世所傳詩者 多出於古窮人之辭也……蓋愈窮則愈工 然則非詩之能窮人 殆窮者而後工也]” 한 말은 인구에 회자된다.

墓道 문자로는 〈瀧岡阡表〉, 〈尹師魯墓誌銘〉, 〈梅聖俞墓誌銘〉, 〈石曼卿墓表〉가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瀧岡阡表〉는 구양수의 아버지 歐陽觀에 대한 墓表이다. 그 첫머리에 “슬프다! 우리 선친께서 세상을 떠나 瀧岡에 안장된 지 60년만에 그 아들 구양수가 비로소 그 무덤에 墓表를 세우니, 감히 늦게 한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렸던 것이다.[嗚呼! 惟我皇考 崇公卜 吉于瀧岡之六十年, 其子修始克表於其阡, 非敢緩也, 蓋有待也]”로 시작하여 4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60년 동안 살아온 심정을 절절히 서술하는 한편 어머니 鄭氏의 말을 빌어서 선친의 청렴하고 인자한 관직 생활을 잘 서술하였다. 〈尹師魯墓誌銘〉에서는知己인尹洙에 대해 당대에 문학과 논변이 뛰어나다는 명망은 있었지만, 窮達과 禍福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절개가 옛 군자에게 손색이 없다는 점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였다.

그리고 〈記舊本韓文後〉, 〈讀李翱文〉, 〈書梅聖俞藁後〉는 당나라 韓愈, 李翱의 산문과 친구인 梅堯臣의 시를 읽고 쓴 글들로 구양수의 문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3. 조선조 문학에 끼친 영향

구양수의 문집은 늦어도 고려중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널리 읽혔던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 中宗 때에는 그의 문집인 《居士集》 50권을 국가에서 간행하였으며, 선집인 《歐文抄》도 널리 읽혔다.¹⁰⁾ 구양수와 蘇軾의 서간문을 선별해 모은 《歐蘇手簡》은 世宗이 특히 좋아하였으며, 서간문 학습의 교재로 널리 읽혔다. 뿐만 아니라 구양수의 글이 들어 있는 《古文眞寶》, 《文章軌範》, 《文章正宗》, 《唐宋八大家文抄》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속속 간행되었다.

10) 黃一權, 〈韓國에서의 歐陽脩 산문 전파와 평가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學》 제53집(2009. 6) 193~217쪽 참조.

許筠은 자신이 편찬한 《歐蘇文略》의 발문에서

歐陽子와 蘇長公의 문장은 宋에서 大家이다. 구양수의 風神이 迥麗함과 情思가 感慨 婉切한 것은 古人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으며, 소장공의 배를 짜내듯 자유자재로 만들어 내어 변화가 무궁하여 사람들이 그 신묘함을 측량하지 못하는 것은 천년 이래 絶唱이다. 그런데 근세에 先秦과 西漢의 문장을 숭상하는 이들은 이를 하찮게 여겨 배우지 않으니, 이는 매우 터무니없는 일이다.¹¹⁾

라 하였고, 張維는 簡易 崔嵬의 문장을 평하면서 班固와 韓愈의 글을 매우 좋아하다가 만년에는 구양수의 글을 좋아했다고 하였다.¹²⁾

洪重聖은,

우리 明宗, 宣祖朝에 이르러 茅氏가 편찬한 《팔대가문초》가 비로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 이에 사람들이 구양수와 소식의 글이 귀한 줄 알아 집집마다 소장하고 읽었다.¹³⁾

라 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전기까지는 歐蘇로 병칭되긴 하였으나 蘇軾에 비해 구양수는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구양수의 문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인 17C에 이르러서인데 그 계기가 된 것은 朱子書인 듯하다.

조선에서 《朱子大全》을 최초로 완독하고 연구한 학자는 退溪 李滉이다. 주자학의 나라로 불리는 조선으로서는 의외로 《주자대전》 완질은 中宗 18년(1523), 교서관(校書館)에서 처음 公刊되었고, 그 20년 후인 1543년에 이황이 처음 그 책을 입수하였다. 이황은 《주자대전》을 읽고 연구한 지 13년만인 56세 때 《朱子書節要》의 편집을 완성하였다. 이 《주자서절요》에는 蘇軾을 酷評한 글들이 실려 있다.

11) 許筠, “歐陽子蘇長公之文, 於宋爲大家. 歐之風神道麗情思感慨婉切者, 前無古人; 長公之弄出機柢, 變化無窮, 人不測其妙者, 亦千年以來絶調. 而近世宗先秦西京者, 乃薄不爲之. 此甚無謂也. 《惺所覆瓿藁》 13권, 〈歐蘇文略跋〉.

12) 張維, “結髮操觚, 卽爲古文詞, 弱冠擢壯元, 名聲大振. 於書酷嗜班韓, 晚而好歐陽子.” 《文忠集》 〈簡易堂集序〉

13) 洪重聖, “逮我明·宣朝, 茅氏所批八大家始至. 於是乎人知歐·蘇之文之貴, 而家莊而戶誦之.” 《芸窩集》 〈山仰齋記〉

蘇氏는 그 몸가짐이 이미 荊公처럼 엄정하지 못하고 그 학술은 결국 功利를 잊지 못하고 속임수가 많다.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秦觀, 李薦 같은 자들은 모두 허황하고 경박하여 사류가 선비 측에 끼워주지도 않았는데 서로 부추기며 현란한 언변을 구사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유지했으나 예의와 엄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비록 그 형세가 사람들을 움직일 정도는 못 되었으나 세상의 방종을 좋아하고 拘檢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미 많이 그 쪽으로 쏠렸으니, 가사 권세를 가졌다면 蔡京이 한 짓을 직접 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드러난 행적만 가지고 평가한다. 그래서 소씨가 그나마 근세 名卿의 반열에 들 수 있었고 남의 장점을 칭찬하길 좋아하는 군자들 또한 아직 드러나지 않은 화를 미리 찾아내어 비판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⁴⁾

주희가 소식을 비판한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사상이 이단인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학의 邪正을 논하는 자리에서는 엄정히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보내온 편지에서 또 歐陽·司馬를 蘇氏와 같다고 하였은즉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歐陽·司馬의 학문이 성현의 높은 경지에는 나 같은 末學이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상과 操守가 모두 儒者의 옛 모습을 잃지 않았고 단지 미진한 바가 있을까 생각될 뿐입니다. 王氏와 蘇氏로 말하자면 모두 佛氏와 老氏를 성인이라 하였으니 이미 儒者의 학문에 순정하지 못합니다.¹⁵⁾

조선 후기에 이르러 正祖는 주자의 서간문 100편을 모아서 《朱書百選》을 편찬하는 한편 당송팔대가의 고문 100편을 손수 선별하여 《唐宋八子百選》을 편찬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朱子の 견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4) “若蘇氏，則其律身已不若荊公之嚴；其爲術，要未忘功利而詭秘過之。其徒如秦觀李薦之流，皆浮誕佻輕，士類不齒，相與扇縱橫捭闔之辨，以持其說，而漠然不知禮義廉恥之爲何物。雖其勢利，未能有以動人，而世之樂放縱惡拘檢者，已紛然向之。使其得志，則凡蔡京之所爲，未必不身爲之也。世徒據其已然者論之。是以，蘇氏猶得在近世名卿之列，而君子樂成人之美者，亦不欲逆探未形之禍，以加譏貶；至於論道學邪正之際，則其辨有在毫釐之間者，雖欲假借而不能私也。” 《朱書節要》 3권, 《答王尙書》

15) 來教又以歐陽司馬同於蘇氏，則熹亦未能不以爲疑也。盖歐陽司馬之學，其於聖賢之高致，固非末學所敢議者，然其所存所守皆不失儒者之舊，特恐有所未盡耳。至於王氏蘇氏，則皆以佛老爲聖人，既不純乎儒者之學矣。上同。

우리나라에서 구양수의 문장을 배운 사람이 많지만 농암 김창협(農巖 金昌協, 1651~1708)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아래는 臺山 金邁淳과 陶谷 李宜顯의 평이다.

國朝에 儒賢이 많았지만 구양자의 문장과 주문공의 의리를 합쳐서 一家를 이룬 분은 오직 선생이 이에 가깝다.¹⁶⁾

농암의 고문은 전아하고 합당하여 구양수와 증공의 체제를 깊이 얻었다.¹⁷⁾

농암은 특히 구양수의 문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 탁월한 논평들을 내었다. 끝으로 구양수 문장에 대한 농암의 총평 몇 가지를 소개한다.

한유의 碑誌文은 곧바로 서술하고 구양수의 비지문은 착중하여 서술한다. 한유 문장의 체제는 근엄하니 그 뛰어난이 字句를 빚어내는 데 있고 구양수 문장은 말이 雅馴하니 그 뛰어난이 篇章의 변화에 있다.¹⁸⁾

한유는 文格이 바르고 힘이 크며, 구양수는 운치가 표일하고 변화가 원만하다.¹⁹⁾

한유는 《尙書》·《左傳》을 법을 숭상하였고, 구양수는 風騷와 司馬遷의 맛을 얻었다.²⁰⁾

한유의 글을 鼓舞하여 읽으매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이 일게 하며, 구양수의 글은 詠歎하여 읽으매 사람으로 하여금 심취하게 한다.²¹⁾

《詩經》 國風과 離騷의 맛으로 문장을 지은 분은 오직 歐陽公 뿐이다. 혹자

16) 金邁淳, “論者曰: ‘國朝儒賢盛矣. 若歐陽子之文章, 朱文公之義理, 合爲一家者, 惟先生庶幾焉.’” 《臺山集》 14권 <家史>.

17) 李宜顯, “農巖爲古文, 典雅稱停, 深得歐曾體制.” 《農巖集》 別集 4권 <陶谷漫錄>

18) 《農巖集》 34권 <雜識> 外篇, “韓碑多直敘, 歐碑多錯綜. 韓體謹嚴, 其奇在於句字陶鑄; 歐語雅馴, 其奇在於篇章變化.”

19) 上同, “韓格正而力大, 歐調逸而機圓.”

20) 上同, “韓本尙書左氏之法, 歐得風騷太史之旨.”

21) 上同, 韓文鼓舞, 讀之使人氣作; 歐文詠歎, 讀之使人心醉.

가 “〈豐樂亭記〉, 〈峴山亭記〉 같은 글이 그러한가?” 하기에 “그에 가깝다. 그러나 이 글들 뿐 아니라 다른 글들도 대체로 모두 그렇다. 반복하여 영탄하는 곳을 보면 바로 그러한 것이다.” 하였다.²²⁾

王弇州(명나라 王世貞)은 스스로 班固와 司馬遷을 배웠다고 하고서 碑誌에서 敘事할 때 힘을 다해 摹寫하여 마치 古人을 뒤따라 잡으려 것처럼 하지만 기실 宋代의 구양수·왕안석에 훨씬 못 미친다. 지금 歐陽公이 지은 碑誌들을 읽어보면 綱領을 이끌어 내고 요긴한 곳들을 착중하여 갖가지 법을 다 갖추었으며 간략하면서도 모든 사적을 다 포괄하고 상세하면서도 서술이 번다하지 않으며 意思는 한가롭되 실정은 꼭진히 묘사하였다. 게다가 그 風神이 돋보이는 곳은 왕왕 마치 그림과도 같으니, 鹿門 茅坤이 “태사공 사마천의 정수를 얻었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²³⁾

谿谷(張維)의 문장은 전아하고 이치에 맞아 비록 송나라 대가에 가까운 듯하지만 너무 평이하고 완만하다. 송나라 문장으로 구양공 같은 분은 비록 느긋하고 평이하며 부드럽고 느슨한 듯하지만 奉事나 奏筭에서 利害를 지적하고 사정을 摹寫함이 꼭진하고 절실하여 사람의 골수에 파고드는 듯하여 군주가 들으면 마음을 움직여 開悟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 序, 記, 碑誌, 祭文 등의 글들은 風神이 굳세고 아름다우며 音調가 표일하고 跌宕하여 잠깐 사이에 感慨하고 一唱三歎의 여운이 있어 왕왕 탄식해 한숨을 쉬다 숨이 끊어지려는 듯한 곳이 있다. 이것이 계곡이 미칠 수 없는 까닭이다.²⁴⁾

4. 맺음말

우리나라에서 唐宋八家文은 이미 四書三經에 버금가는 필독서가 된 지 오래이다. 구양

22) 상동, “以國風離騷之旨爲文章, 唯歐公爲然. 或曰, ‘如豐樂亭峴山亭記之類, 是否?’ 曰, ‘近之. 然不獨此也. 他文大抵皆然, 觀其反復詠歎處, 卽是.’”

23) 상동, “王弇州自謂學班馬, 其爲碑誌敘事, 極力摹畫, 若將以追踵古人, 而其實遠不及宋之歐王. 今讀歐公諸碑誌, 其提挈綱領, 錯綜關節, 種種有法, 簡而能該, 詳而不繁, 意度閒暇, 而情事曲盡, 風神生色處, 又往往如畫. 茅鹿門以爲得太史公之髓者此也.”

24) 상동, 谿谷之文, 典則理致, 雖近宋大家, 然失之太平緩. 宋文如歐公, 雖若寬平和緩, 而其封事奏筭, 指陳利害, 摸寫事情, 委曲深切, 刺骨透髓, 令人主聽之, 不得不動心開悟. 其序記碑誌祭文等文, 風神逸麗, 音調逸宕, 俯仰感慨, 一唱三歎, 往往有獻歎欲絕處. 此所以不可及也.

수의 글은 고려 말부터 늦어도 조선 중기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조선 후기에 와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미 우리 한문의 원전이 된 지 오래인 것이다.

한문고전은 동아시아 공통의 문자인 한문으로 된 책이니, 이를 독해하려면 동아시아 공통의 원전에 대한 깊은 소양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한문은 많은 원전의 글들이 그대로 전거가 되어 도처에서 예고 없이 출몰한다. 전거는 쉽게 드러나는 곳도 있지만 문맥 속에 용해되어 잘 보이지 않는 곳도 많다. 그래서 겉으로는 오역이 아닌 듯 보여도 전거를 주석으로 달지 않으면 오독하기 쉽고 무슨 말인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그 의미를 통 이해할 수 없다.

예컨대, 寒岡 鄭述이 昌寧縣監으로 부임한 뒤에 지은 시인 昌山衙閣偶吟에 “失計昌山事 事非 思之百爾不如歸”라는 구절이 있다. “창녕에(서) 계책을 잘못하여 일마다 그릇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가느니만 못하다.”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창녕에(서) 계책을 잘못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대개 창녕현감으로서 고을을 다스리는 계책을 잘못 세워서 일마다 그르쳤다는 뜻으로 보기 쉬울 것이다. 즉 고을을 잘못 다스렸다는 뜻으로 보기 쉽다. 이 구절은 朱子가 南康知事에 부임한 뒤에 쓴 편지, 與袁寺丞에 “熹失計此來 無可言者”라 한 구절을 보지 못하고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 이 구절은 “내가 이곳에 잘못 왔으니, 말할 만한 것이 없다.”로 해석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문헌만 정리 번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이는 아주 短見이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자기 나라 문헌을 정리하기 이전에 먼저 그 원전이 되는 중국의 고전을 정리 또는 번역하였다. 일본은 <<漢文大系>>, <<新修大藏經>>, <<漢詩大成>> 등과 같은 방대한 전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번역하고 그 바탕 위에서 <<大漢和辭典>>, <<望月大辭典>>, <<禪學大辭典>>과 같은 방대하고 정확한 사전들을 중국보다 먼저 편찬해 낼 수 있었다. 필자가 본 바로도 일제시대에 나온 책에 이미 四書의 細註까지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으며, 와세다대학 문학부에서 나온 <<고문진보>> 번역은 검색 기능이 발달한 지금도 그보다 더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주석, 직역, 의역이 달려 있었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실로 自愧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비록 중국에서 나온 고전이지만 이미 우리의 사상과 문헌 속에 녹아들어 있다면 이는 이미 우리의 고전인 것이다. 사서삼경, 고문진보, 통감절요, 당송팔가문, 朱子書 등 수많은 중국 고전들은 우리 문헌을 그 저변에서 떠받치는 원전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지 오래이다. 이러한 고전들을 정리하고 번역하는 일은 그 자체가 이미 우리 고전을 정리하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선인들이 쓴 문헌을 독해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아가 韓中日 삼국이

합중하기도 하고 각축하기도 하는 오늘날, 삼국이 공동으로 읽어온 한문 고전들을 번역하고 연구하는 일은 이웃나라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여 현재 우리의 좌표를 바로 세우는 한편 우리의 학문과 문화를 심화하고 고양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參考文獻]

- 郭正忠, 《歐陽脩評傳》, 黃一權 번역, 學古房, 2009.
黃一權, 〈韓國에서의 歐陽脩 산문 전파와 평가에 관한 연구〉, 《中國語文學》 제53집, 2009.
郭魯鳳, 〈歐陽脩 散文研究〉, 《中國學研究》 제3집, //
곽노봉, 〈歐陽脩 經學研究〉, 《중국학연구》 제5집, //
송혁기, 《조선후기 한국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출판사, 2006.
金昌協, 《農巖集》, 한국고전번역원.

東洋古典情報의 콘텐츠화 摸索

崔 熙 洙(祥明大學校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1. 東洋古典情報化 大衆化의 課題
2. 東洋古典情報의 콘텐츠화 必要性
3. 東洋古典情報의 價値와 情報서비스의 現在
4. 東洋古典情報 서비스의 改善 方向
5. 東洋古典情報 콘텐츠화 方案

1. 東洋古典情報化 大衆化의 課題

傳統文化研究會는 급격한 서구화로 인해 우리가 갖고 있던 傳統 價値의 소멸을 안타까워하며,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통해 精神的 價値를 계발하는데 그 설립취지를 갖고 출범한 기관이다. 傳統文化研究會의 주요 목표 가운데 동양고전의 부흥¹⁾이 있고, 이에 따라 동양고전 국역, 동양고전 교육, 동양고전 정보화의 고전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전국역사업을 들 수 있다. 고전국역은 주로 동양고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자체국역으로 동양고전국역총서 15종 19책, 국고지원으로 동양고전역주총서 16종 56책을 간행하였다.²⁾ 그리고 이러한 고전국역사업의 성과는 동양고전종합DB(<http://db.cyberseodang.or.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傳統文化研究會는 동양고전종합DB와 아울러 사이버서당(<http://www.cyberseodang.or.kr/>)과 사이버서원(<http://hm.cyberseodang.or.kr/>)을 운영하고 있다. 동양고전종합 DB가 이제까지 傳統文化研究會에서 번역한 동양고전들의 원문과 해석, 그리고 주석을 제공하는 DB 서비스라면, 사이버서당과 사이버서원은 그것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콘텐츠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서당은 주로 한자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한자를 친숙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로 유아·초등용 서비스와 중고생용 서비스, 그리고 대학일반인용 서비스

1) 전통문화연구회에서 그동안 간행한 東洋古典은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및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中國古典이 중심이었다. 韓國古典의 경우는 한국고전을 전문으로 번역하는 韓國古典翻譯院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日本古典의 경우는 추후 번역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는 동양고전은 주로 중국고전을 가리킨다.

2) 傳統文化研究會, <http://www.juntong.or.kr/intro3.asp>

로 구분되어 있고, 주로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나, 멀티미디어 한자교육, 그리고 동양고전의 쉬운 해설본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반면에 사이버서원은 한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서 한문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주로 대학일반인 이상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이다. 여기에는 주로 한문강독의 기초부터, 동양고전 원전 강독 등을 중심으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傳統文化研究會는 사단법인으로서 그간 어문교육과 관련한 많은 사회적 역할을 견인해 왔다.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동양고전의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아울러 정보화를 통해 많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한 점은 매우 높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동양고전의 현대화는 결국 한문 원전을 오늘날의 현대문으로 번역하고, 해당 번역문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서비스하여 현대인들이 동양고전의 價値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동양고전의 大衆化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大衆化란 정확히 그 값을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영역이다.

大衆化란 일반대중들에게 해당 영역의 성과들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지식정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의 大衆化를 흔히들 번역과 같은 현대화로 오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더욱이 학술적 영역에서의 大衆化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역사나 과학 쪽에서 콘텐츠화를 통한 大衆化 시도 노력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³⁾ 그 시도들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TV에서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일거에 대중들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大衆化가 쉽지는 않다. 여기에서 콘텐츠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모색의 必要性이 대두된다. 이 글은 東洋古典情報를 어떤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이 동양고전의 大衆化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 東洋古典情報의 콘텐츠화 必要性

사실 콘텐츠라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 인프

3) 한국고대사학회는 이른바 유사역사학에서 주장하는 한국고대사상에 대해서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한국고대사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과학의 생활화를 표방하며 전국의 주요 도서관에서 대중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역사 내지 과학의 大衆化를 견인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라 등 정보화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용어이다. 즉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는 시점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 중점 시책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2000년대이후 부터는 이른바 콘텐츠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콘텐츠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콘텐츠와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융합인문학들이 탄생하기 시작했고, 어떠한 분야라도 해당분야와 콘텐츠를 결합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콘텐츠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여년 전이지만 사실 콘텐츠의 영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즉 소비를 전제로 생산한 모든 산출물들은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를 전제로 했다는 것 자체는 콘텐츠가 상품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⁴⁾ 대부분의 콘텐츠는 상품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업적 價値, 산업적 價値를 일차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즉 얼마만큼 팔릴 것인가, 얼마만큼 부가價値를 생산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서비스 또한 디지털 사회의 전개와 맞물려 진행되어 왔기에 이같은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비근한 예로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 처음에는 공공근로 기반의 국가 중요기록정보의 영구적 보존이라는 목적 하에서 진행되었지만, 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국가가 투입한 재원만큼의 부가價値를 생산해 내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것은 정보화 사업의 경제적 원리, 즉 투입된 비용에 대비하여 부가價値를 얼마만큼 과생시켰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 기반한다. 이 때문에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또한 경제적 부가價値를 과생시키기 위해 방향을 활용으로 선회하고 각종 콘텐츠화 기반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시각은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역사, 문화, 교육과 같은 인문학적 價値에 기반을 둔 분야의 지식정보들이 어떻게 경제적 價値 판단의 대상이 되냐는 비판과 아울러 공공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주장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당 분야에 성과없는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분야에서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한 각종 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금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⁵⁾

4) 물론 여기에는 유료콘텐츠와 무료콘텐츠, 즉 유료상품과 무료상품으로 구분될 수 있다.

5) 그렇다고 해서 원래 정보화의 목적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에 비해 적은 규모

이들 콘텐츠들은 일반대중이 접근하기에 난해하기만 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예를 들어 고전문야에서는 어렵기만 하던 한자강독 자료들을 성독자료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함으로써 어려운 한자자료로만 생각해 왔던 고전정보를 멀티미디어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를 읽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을 쉽게 전자지도나 2D플래시 등의 비주얼한 자료들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같은 성과들은 고전정보의 콘텐츠화라는 영역에서 일구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해당 고전의 핵심적 價値를 그대로 대중들에게 전달해 주는 가 하는 점이다. 사실 고전정보를 현대화해서 현대인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은 단순히 언어만 현대인의 언어로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거기에는 역사, 문화적 배경의 변화 등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논어〉, 〈맹자〉를 읽으면서 춘추전국시대에 대한 배경이 없이 그 어떠한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적 측면 뿐 아니라 價値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서삼경이 지니는 고전으로서의 價値는 단순히 과거 춘추전국시대의 역사문화적 상황이나 당시 공자나 맹자가 일으켰던 유교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지 않다. 공자나 맹자가 사회의 어떤 측면을 문제로 보았으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당시 현실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나아가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야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등 현실 인식과 비판, 문제의 분석과 대안의 마련 등이 동양고전이 갖는 핵심적 價値이기 때문이다.

콘텐츠화는 TV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과 같이 단순히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다. 콘텐츠화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핵심價値를 대중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중들이 그 價値를 이해하고, 그 價値를 계승함으로써 고전의 새로운 價値를 재발견하는, 즉 지식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인문학의 영역에서 價値의 재발견, 새로운 지식의 모색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디지털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문주의적 결함 - 예를 들면 신속, 정확, 효율 등의 문제 - 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인문학의 입장에서 콘텐츠를 통해 이러한 價値를 탐색하는 일이 게을러져서는 안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고전의 콘텐츠화는 대중들로 하여금 생각

이긴 하지만 꾸준히 지식정보의 정보화는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콘텐츠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을 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 그쳐서는 안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東洋古典情報の 價値와 情報서비스의 現在

東洋古典情報の 콘텐츠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동양고전의 핵심 價値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 동양고전은 인문학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유교적 價値를 중시했던 전통사회에서 경전을 중심으로 한 동양고전들은 지고의 價値를 지닌 콘텐츠였다. 그렇다면 현대적 관점에서 동양고전의 價値는 어디에 있을까. 많은 인문학자들이 인문학 강좌를 하면서 그 텍스트로 동양고전을 채택하고 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동양고전의 價値를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傳統文化硏究會의 사이버서당이나 사이버서원에서 인문교양강좌로 등록되어 있는 강좌의 내용만 봐도, 주역, 동양고서, 대학-중용 등의 동양고전이 그 대상임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동양고전이 가지는 현대적 價値는 어디에 있을까. 동양고전이 갖는 價値에는 전통적 價値와 현대적 價値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전통적 價値는 동양고전의 원래적 價値, 학술적 價値, 역사적 價値 등을 말하고, 현대적 價値는 동양고전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갖는 價値이다. 그것은 활용의 價値, 경제적 價値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대적 價値가 중요한 이유는 동양고전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내는 주체가 바로 현대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동양고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속에서 현재적 價値를 파악하여 새로운 價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콘텐츠가 중요하다.

동양고전 -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동양고전은 춘추전국시대 이래 성립된 제자백가서가 핵심이다. - 은 가장 큰 특징은 제자백가로 대표되는 사상서라는 데 있다.⁶⁾ 사상이란 현실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당대의 정치, 사회, 경제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양고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상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시대적 배경과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한다. 한자나 한문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동양고전을 접하는 대중들이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 바로 해당 시대의 역

6) 동양고전이 반드시 제자백가서를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하기 동양고전의 특징은 주로 제자백가와 관련된 사항들에서 추출한 것이다.

사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번역을 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자나 맹자와 같은 유가들이 왜 인과 예를 주장하고 다녔는지, 왜 여러 국가를 주유하면서 자신의 사상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논어〉와 〈맹자〉와 같은 유가의 핵심 사상서들을 이해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묵자와 같은 묵가 사상이나 노자, 장자와 같은 도가사상들 또한 그 시대를 살았던 사상가들이 자신의 시대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상을 정리하고 설파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고전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시대적, 역사적 사회환경을 배경으로 성립된 사상체계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동양고전이 갖는 특징은 처음 제자백가들에 의해서 주창된 사상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완성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후학들은 선현들의 텍스트에 저마다의 해석을 덧붙여 주석의 형태로 담아냈다. 즉 여러 후학들이 당대 주창자들이 남긴 글에 자신들의 해석을 담아낸 주석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고전에서는 주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당대 주창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서술된 사상서들이 아니라, 후대 제자들에 의해 정리되고 서술된 사상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를 추적하고, 나아가 제자들이 이해한 맥락 하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책에도 수많은 후학들의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이 때문에 주석에 의해 사상적인 대립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춘추시대 노나라의 역사서라고 알려진 〈춘추〉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춘추〉는 후대에 〈춘추공양전〉, 〈춘추좌씨전〉, 〈춘추곡량전〉이 춘추삼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공양전과 좌씨전은 그 체제나 내용에 있어서 〈춘추〉를 보는 입장을 달리하는 후학들에 의해서 편술되었기 때문에 그 논란은 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춘추〉는 전한대부터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면서 그 속에 공자가 남긴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특히 공양전과 곡량전이 집중 연구되었다. 이후 시기 훈고학의 발달로 인해 좌씨전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좌씨전의 경우에는 〈춘추〉의 내용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서 춘추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삼전이 성립된 이래 각 학파들마다 정본 주석서를 달리해서 후대까지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전에 대한 주석은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고 풍부하게 원전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그만큼 주석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이 두 번째 동양고전의 특징이 된다.

세 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바로 두 가지 이유로 동양고전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속적 價

價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한번 성립된 고전 텍스트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학자들이 당대의 주석을 붙이고, 앞의 주석에 찬성하는 내용이나 반대하는 내용들이 계속 추가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주석서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대별 주석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왜 그 시기에 그런 주석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늘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텍스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양고전은 현재적 관점에 있어서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이 동양고전이 지니는 세 번째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늘 새로운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동양고전이다.

이상의 정보로부터 우리는 동양고전이 지니는 핵심적 價値를 도출할 수 있다. 먼저 동양고전이 유교를 비롯한 사상체계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전통적 價値 이상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사상가들이 당대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한 사상을 도출하고 체계화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고전 교육은 유교사상, 유교적 덕목 - 인, 의, 예, 지, 신, 충, 효 등 - 의 價値를 중시해 왔다. 그러나 본질적 價値는 그러한 사상적 價値를 도출해 내는 기반이다. 그것은 사회 제반현상들을 분석하고 그 현상들을 꿰뚫는 문제의식, 즉 비판의식이다. 사상의 출현이 되는 시대를 배경으로 당대의 여러 문제현상들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정보의 가장 핵심적 價値는 비판의식의 함양에 둘 필요가 있다.

둘째, 그러한 비판의식은 단순 비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회 제반현상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문제해결력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사회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공자가 춘추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나라의 역사문화를 파악하고, 당시에 필요한 예악의 질서를 회복할 것을 주창한 것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춘추시대의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대안이 주나라의 예문에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공자와 맹자는 예를 중시했지만, 한비자와 같은 이는 법을 중시하기도 하였다. 저마다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냈던 것이다. 따라서 고전정보의 두 번째 價値는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셋째, 이러한 비판의식과 문제해결 방안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생각해 내는 창의력과 상상력에 근거한다. 東洋古典情報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한자는 문자 한글자의 의미가 아니라 한 글자마다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자가 남긴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후대의 학자들이 ‘미언대의’라 지칭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작은 말 한마디 안에 큰 의미를 찾기 위해 학자들은 생각하고 또 상상했던 것이다. 따라서 동양고전의 셋째 價値는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동양고전 정보화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들은 이러한 동양고전의 핵심價値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면 동양고전의 바람직한 콘텐츠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東洋古典情報 서비스의 현재는 한자교육과 한문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인들에게 한자로 적힌 정보들이 우선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자에 익숙해지고, 한문 문장에 친숙해 지기 위한 방법으로 한자와 한문교육에 집중한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자와 한문교육을 통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동양고전의 핵심價値가 달성된다고 보기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콘텐츠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東洋古典情報 서비스의 改善 方向

傳統文化硏究會의 동양고전 정보서비스는 앞서 언급한대로 매우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또 앞으로도 거둘 것이다. 특히 한자와 한문에 대한 이용자층의 접근성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메뉴들을 개발하여 대상별로 서비스를 구현한 것은 바람직하다. 앞서 서비스들을 메뉴별로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⁷⁾

○ 동양고전종합 DB

- 사부별 보기

경(14종)-사(6종)-자(12종)-집(4종)-기초교양서(7종)

- 서명별 보기

가(5종)-나(2종)-다(7종)-마(2종)-사(10종)-아(7종)-자(8종)-차(2종)-타(1종)

- 13경 주소

논어주소-상서정의-예기정의-주역정의

- AUDIO & VIDEO

AUDO(8종)-VIDEO(30종)

7) 아래의 도표는 傳統文化硏究會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이다.

○ 사이버서당

- 유아.초등 상상한자

어린이고전/한자 강좌, 교과서어휘학습, 상상한자, 만화로배우는한자, 학부모공간

- 중고교생

중고교한문강좌, 중고교무료강좌, 중고교강사진, 중고교토론게시판, 중고교학습자료실

- 대학.일반

대학.일반한문강좌, 대학.일반무료강좌, 대학.일반강사진, 대학.일반토론게시판

- 자료참고

강좌찾기, 강의원문.교안, 중학교한문교과서, 고등학교한문교과서, 한국사연표.동양연표, 부수로부수능한자 등

○ 사이버서원

- 인문교양

인문교양한문강좌, 인문교양무료강좌, 인문교양강사진, 인문교양토론게시판

- 기초한문

기초한문한문강좌, 기초한문무료강좌, 기초한문강사진, 기초한문토론게시판

- 중급한문

중급한문한문강좌, 중급한문무료강좌, 중급한문강사진, 중급한문토론게시판

- 고급한문

고급한문한문강좌, 고급한문무료강좌, 고급한문강사진, 고급한문토론게시판

- 자료참고

강좌기본정보, 강의원문.교안, 강의교재도서검색, 동양학사전표제어검색, 알쏭달쏭한자, 오늘의고전문구, 한문고전쓰기노트, 한문급수쓰기노트

傳統文化硏究會에서 이처럼 동양고전에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 타겟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차별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여타 정보서비스에서 여전히 하나의 통합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용자들이 같은 내용을 서비스받는 것이 대부분임을 감안할 때 동양고전에 대한 이해 가능정도를 바탕으로 그 대상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서비스를 설계, 구현하는 것은 서비스의 價値를 크게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

란 정보의 수용자가 이해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비스되어야만 유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서비스에 있어서 타겟의 설정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傳統文化研究會의 동양고전 정보서비스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문과 해석, 주석본을 서비스하는 DB서비스와는 달리 한자와 동양고전에 대해서 알기 쉽게, 또는 재미있게 재구성하여 서비스하는 내용을 우리는 “콘텐츠”서비스라고 한다. 콘텐츠는 말 그대로 내용물이다. 문화산업에서 콘텐츠는 문화상품으로서 기능한다. 상품은 소비자들에게 효용價値를 지녀야 한다. 즉 구매를 통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욕구가 충족되거나 해소되어야만 효용價値를 지니는 것이다. 콘텐츠 또한 마찬가지이다. 해당 콘텐츠를 소비하고 나서 상품을 잘 샀다고 하는 만족감이 들 때 그 콘텐츠 즉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 傳統文化研究會에서 사이버서당이나 사이버서원과 같이 대상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설정한 것도 일종의 상품 만족도 제고를 위한 타겟 차별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東洋古典情報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서비스에는 이용자들의 어떠한 피드백에 관한 내용도 남겨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어떤 욕구나 동기를 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고, 이용후에는 그 욕구나 동기가 충족 또는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을 구분하여 정보서비스를 설계할 때 서비스 주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지, 해당 콘텐츠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담고 있는 내용들이다. 사실 동양고전의 대부분은 한자라는 문자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한자는 물리적 형태의 지칭일 뿐 한자 한글자 한글자는 모두 문자가 탄생했을 시기, 사용되었을 시기의 문화를 담고 있는 아주 특수한 형태의 문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전의 현대화라는 것은 단지 한자의 뜻을 오늘날의 문자로 옮긴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과거 전통시대에는 어려서부터 <동몽선습>이나 <소학>과 같은 학습서를 매일 읽으면서 그 글자의 의미를 음미했고, 그것이 체화되어 사서삼경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같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자를 대입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동양고전을 大衆化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콘텐츠는 단순히 고전을 알기 쉽게, 재미있게 풀어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동양고전이 지니는 핵심적 價値를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그 價値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가 하는 점들

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東洋古典情報의 콘텐츠화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東洋古典情報의 콘텐츠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의 수요이다. 동양고전 정보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서비스를 원하는가에 대한 파악이다. 원문정보, 번역문정보, 멀티미디어정보, 동영상정보 등등 정보의 유형과 내용에 대한 것이다. 물론 서비스 설계시에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서비스는 수시로 그 수요에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어야 한다. 이용자들의 수요는 수시로 변하고 또 다양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령 어느 이용자는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느 이용자는 한자능력검정시험 준비를 위해, 어느 이용자는 학문 연구를 위한 강독을 위해 등등 다양할 수 있다. 콘텐츠가 상품으로서 기능한다는 앞서의 논의를 감안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고전정보의 현대화 수준과 내용의 조절이다. 이것은 곧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의 설계에 다름이 아니다. 가령 동양고전의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용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이용자도 있다. 어느 수준에 맞춰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수요 조사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제까지 진행되어 있는 대부분의 정보서비스들은 철저히 공급자 중심의 정보서비스였다. 그것은 정보의 공급자가 이용자의 수요를 재단하고 공급자 입장에서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무료정보서비스는 그 정도가 심하다. 따라서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설계는 공급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셋째는 정보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한자를 포함한 어문문화의 확산을 얻고자 한다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한자 어휘를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자능력검정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시험에 대비한 내용을 집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양고전의 내용을 이해해서 교양수준을 높일 것이라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동영상강의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東洋古典情報 서비스의 경우 무엇을 가장 커다란 목표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하위 서비스를 구성하는 메뉴들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 장에서 살펴본 동양고전의 價値를 어떻게 콘텐츠에 투영하고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가령 비판의식과 문제해결, 창의력과 상상력은 추

상적인 내용이므로 과학교육처럼 쉽게 구성하기가 어렵다. 동양고전에서 적절한 사례를 찾고, 이를 이해하고 토론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현재로서 최선은 동양고전이 담고 있는 특징들을 우선 풍부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이야기한 정보서비스 목표에 따라 서비스를 구분하는 일이 필요하다.

안동의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유교문화종합정보 DB를 1999년부터 구축하여 오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주요한 영남사림문집들은 거의 모두 정보화되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문집들은 국역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정보 서비스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다른 방식의 콘텐츠 - 즉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방식의 콘텐츠 서비스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을 다룬 선비의 하루라든지, 조선시대 유산기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선역하여 문화콘텐츠 창작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였고, 조선시대 사행록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서비스를 구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서비스 활성화는 요원했다.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유교문화정보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스토리테마파크 <http://story.ugyo.net> 서비스가 시작되고 부터였다. 유교문화라는 과거 조상들의 일상에 주목하여 선비들의 일기 자료를 번역하고, 그 가운데 문화콘텐츠 창작소재로 흥미로운 내용들을 따로 구축하여 콘텐츠 창작자들에게 서비스하는 스토리테마파크 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스토리테마파크는 처음 구축단계에서 실제 서비스의 메인 타겟인 문화콘텐츠 창작자 집단들을 참여시켜 각종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였고, 서비스가 구현된 뒤에는 창작집단들의 팸투어를 통해 실제 일기에 나오는 현장을 방문하여 창작자들의 현장감을 살려주기도 하였다. 아울러 서비스 확산을 위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을 올해까지 2회 진행하였다.

아직까지 스토리테마파크를 통해 킬러콘텐츠가 탄생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매년 있는 컨퍼런스와 창작공모전, 그리고 웹진을 통해 일기자료 속에 나타나 있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상과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유교문화는 유교문화종합정보DB 당시보다 크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웹진의 경우 시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추출하여 창작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발송해 주는 등의 노력을 통해 창작자들이 조선시대 일기자료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가령 대학입시철이 되면 조선시대 과거 응시와 관련된 일기자료의 내용을 추출하여 에피소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창작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즉 유교문화가 지니는 핵심價値를 발굴하여 정보를 서비스하고 확산시키는데 스토리테마파크 서비스가 콘텐츠로서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테마파크의 서비스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메인 서비스는 테마스토리 서비스로 일기의 내용가운데 창작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야기들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일기가 하루하루의 기록임을 감안하여 전체 일기에서 관련된 내용을 발췌, 하나의 에피소드로 제공함으로써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고, 아울러 몇 년간의 일기를 모두 읽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두 번째는 인물이야기로, 일기 에피소드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신분들을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전통시대가 신분제사회였음을 감안할 때 각 신분들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갖는 태도들 또한 문화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멀티미디어 정보이다. 일기는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공간이나 장소, 소도구 등은 텍스트로 이해될 때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때문에 일기속에 가마가 등장한다면 사람이 타고 있는 가마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크기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서원 건립과 같이 긴 시간, 오랜 과정을 거치는 내용의 경우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건립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아울러 복원이 필요한 경우 3D복원을, 현장이 남아있는 경우 현장사진 등을 제공하여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그런데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역사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 정보와 용어사전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다. 사실 일기는 일기를 쓰는 사람의 주관적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된 용어나 내용들이 본인은 이해하지만 본인이 아닌 타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렵다. 더욱이 몇백년전 사람들의 기록을 현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즉 문화적 장벽과 언어적 장벽 두 가지를 일기자료는 갖고 있는 셈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선 현대인의 문법에 맞도록 번역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둘째 일기에 담겨진 조선시대의 문화적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스토리테마파크에서는 호칭, 관습 등에 대한 배경정보 제공을 통해 일기의 내용을 읽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이상을 참조해 보면, 東洋古典情報 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몇가지 얻을 수 있다. 우선은 타겟층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 각 타겟층에 맞게 정보의 내용과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풍부한 부가정보들이 서비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동양고전 서비스는 우선 한자와 한문정보 익숙도 정도에 따라 - 주로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놓고 있다. 한자와 한문 익숙도 정도가 연령에 따라 비례하는 것은 어느정도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30대 중반까지도 한자를 전혀 모르는 층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서비스 목표에 따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처음 한자를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자와 친숙해지기 위한 만화, 애니메이션, 한자의 형성과정(상형) 등의 서비스를 몰아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자에 어느정도 익숙해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한자 어휘를 늘릴 수 있는 메뉴들이 필요하다. 교과서한자, 생활속 사자성어, 한자와 우리말과 같은 서비스와 아울러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셋째는 한문입문 과정이다. 한자 어휘에 어느정도 익숙해져 있어서 초보적인 한문문장의 해석이 가능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기본 경서들이나, 유명한 시문들의 모음집 등을 강독할 수 있겠다. 넷째는 전문가입문과정이다. 본격적인 한문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서는 물론이고 역사서와 문학서 등을 강독해 나가는 과정으로 한문전문가 수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할 수 있다. 콘텐츠의 구성도 한자입문 - 한자어휘력 증진 - 한문입문 - 한문전문가 과정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한자입문 단계에서는 마법천자문과 같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한자어휘력 증진 단계에서는 생활 속의 한자문화를 발굴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 한자가 쓰이고 있는지를 체험시킬 필요가 있다. 한문입문 단계에서부터는 단순한 텍스트의 번역이 아니라, 당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한문텍스트의 해석이 단순히 외국어의 번역이 아니라 과거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지식배경이 있어야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5. 東洋古典情報 콘텐츠화 方案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논어〉 학이편 제일 첫구절이다. 인구에 엄청나게 회자되면서, 많은 이들은 〈논어〉 하면 이 구절을 떠올릴 수 있다. 그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했고, 듣는 사람들 또한 수없이 많이 듣기 때문에 기억되는 것이다. 위 구절의 전통적인 번역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다. 아무런 의심없이 위 구절의 원문과 번역문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원래 저 구절의 의미는 때때로 공부한 것을 익히라는 뜻이 아니고, 시도때도 없이, 내지는 항상이라는 의미이다. 즉 배우고 늘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이다. 그만큼 한자는 어렵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주석이다. <논어집주>에는 꺾이란 한자어는 새가 날기위해 날개짓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 날기 위해 쉽없이 날개짓하는 것처럼 익히라는 의미라고 되어 있다. 즉 주석을 보면 그 글자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동양고전의 특징에 있듯이 주석은 이처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일반인들에 대한 한자와 한문교육에서 주석은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

예컨대 멀티미디어 한자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때 스승과 제자가 앉아서 한자에 대해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 속에 습꺾자에 대한 논의만 있어서는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꺾자가 원래 새의 날개짓에서 온 글자이고, 새가 날개짓을 그만두고 날 수가 없듯이 학문 또한 그렇게 지속적으로 익혀야 한다는 의미를 거기에 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한자와 한문교육에 있어서의 콘텐츠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정확한 고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고전 콘텐츠들은 그와 같이 구성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물론 이같은 콘텐츠 제작은 전문가들의 연구성과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고전 콘텐츠의 구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자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자를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활 속의 한자를 일러주는 것이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한자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자라고 알지 못했던 것이 실은 한자로 구성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은 재미요소와 아울러 그만큼 한자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여기 저기 굴러다니는 불필요한 것은 잡동사니라고 하지만 실은 雜同散異에서 나온 것이라든지, 최근에 정치권에서 흔히 언급되는 농단 壟斷이 <맹자>의 고사에서 유래된 것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시의적인 용어이기도 하면서, 아울러 한자의 유래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동양고전서비스들은 책의 제목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동양고전의 제목들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자 내지 한문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정보 서비스에 처음 접속했을 때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로 구성된 페이지를 접하게 되면 심중팔구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포기하게 마련이다. 즉 처음 접하는 페이지와 정보의 페이지 구성 요소들이 오히려 동양고전의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양고전종합 DB 페이지에 접속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부별 보기 페이지이다. 사부란 전통적인 고전의 분류체계인데 어지간히 한문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거기에 더하여 사부별로 해당되는 고전의 제목들만 한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더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가령 경부의 논어집주와 논어주소는 전문적으로 한문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들은 텍스트로 서비스하는

것보다는 지식맵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맵을 통해 고전들의 명명과 지은이 등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고전들의 사상체계와 흐름, 그 계통을 이해하고, 어느 부분에서 해석이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등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논어집주〉의 경우 주자가 〈논어〉에 관한 주석들을 집대성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이끌어 낸 책이다. 주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선학들 즉 정현 鄭玄이나 마융 馬融과 같은 오래된 학자의 주석들을 폭넓게 인용했고, 주석의 상당부분은 이들의 견해가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어집주〉 번역본에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것이 고전의 價値를 반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서비스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서비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번역의 현대화문제이다. 앞서 예로 든 〈논어〉 학이편 첫 구절은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로 되어 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의 세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어법일 수밖에 없다. 현대화란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과거의 언어를 치환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문을 번역하는데 있어서 요즘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로 대체해주는 것은 한문을 잘해야 할 뿐 아니라 국어의 변화에도 민감해야 가능한 사안이다. 특히 감탄사나 형용사와 같은 어구들은 현대인들이 즐겨쓰는 표현으로 바꾸어 주어야 현대인들이 더 이상 한문을 과거의 죽은 언어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콘텐츠화 방안들은 결국 문화콘텐츠 창작이라는 영역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 동양고전의 저변이 확대되고, 그 저변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중국인 장지량 감독에 의해 한중합작 영화 〈묵공〉이 만들어져 개봉되었다. 〈묵공〉은 영화제목 자체가 갖고 있듯이 춘추전국시대 묵가의 활동에 관한 영화이다. 우리나라의 안성기, 최시원, 중국의 유덕화와 판빙빙 등이 열연해서 각광을 받았던 영화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묵가는 춘추시대 묵적이란 인물에 의해 수립된 사상이다. 흔히 겸애설로 대표되는 그의 사상적 특징은 “어떠한 침략에도 반대한다(非攻)”이었다.⁸⁾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혼란기였던 춘추전국시대에 묵가들은 침략전쟁에 대항하는 방어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사상을 실천했다. 영화 〈묵공〉은 바로 그러한 묵가의 사상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묵가의 겸애설이나 춘추전국시대 이

8) 묵적의 행적 가운데 유명한 일화는 송나라를 침공하려는 초나라를 찾아가서 전쟁을 막은 것이다. 초나라의 공격무기 장인인 공수반을 찾아가 그의 공격무기를 바탕으로 일종의 시뮬레이션 게임을 했는데 공수반의 9번 공격을 묵자가 모두 막아내어 결국 초나라는 송나라의 침략을 포기했다. (〈묵자〉 공수반)

들의 활약상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저 전쟁영화일뿐이다.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저변이 확대되려면 해당 지식의 저변부터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콘텐츠화란 흔히 이야기하듯이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올리는데만 그 목적이 있지 않다. 학술적인 성과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 성과를 대중들에게 쉽게 전파함으로써 인문학적 價値를 제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전의 價値를 재인식하고 그를 이해함으로써 현재 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도모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화에 대한 접근은 신중히, 그리고 차분히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화를 통해 고전정보의 價値를 확산하려면 무엇보다 그 價値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용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제까지의 콘텐츠화는 이용자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이용자의 입장이 우선시되어야만 콘텐츠의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고전의 價値 제고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김현, 《인문정보학의 모색》, 북코리아, 2012
 김풍기, 《고전 번역과 大衆化, 그 현실과 전망》, 《우리말글》56, 2012
 권혁래, 《고전 大衆化의 현재와 미래》, 《민족문화》45, 2015
 하승현, 《고전번역원 고전 大衆化사업의 현황과 課題》, 《민족문화》45, 2015
 최희수, 《인문지식 기반 창작자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인문콘텐츠》36, 2015
 서우석, 조성남, 《고전 기반 콘텐츠 창작 활동의 증진을 위한 시론적 연구》, 《문화경제연구》19-1, 2016

漢字와 漢字語의 보존을 위한 憲法的 辯論¹⁾

金 汝 熙(변호사, 前 憲法裁判官)

李 仁 皓(中央大 法學專門大學院 교수, 憲法學)

1. 한글전용法制의 概觀 : 한글전용의 强制性
 - 가. 한글전용表記의 강제의 歷史
 - 나. 정부의 강제적 한글전용정책을 법률로 승인·확정한 「국어기본법」
 - 다. 한자배제의 言語生活을 强요하는 다른 法令과 施策
2. 국민의 文字選擇權(한국어표기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侵害
3. ‘首都 移轉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判示의 의미
4. 文化國家 原理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의 解釋論
5. 公文書의 의미
6.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대한 새로운 분석연구
7. 私教育에 内물린 한자교육의 弊害 : ‘階級의 벽’이 된 漢字
8. 漢字, 21세기 情報時代에도 적합한 文字
9. 結論

1. 한글전용法制의 概觀 : 한글전용의 强制性

가. 한글전용表記의 강제의 歷史

국가가 한글전용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1948년의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단지 1개 조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한글전용을 당장 강제한 것은 아니었다. 公用文書에 한정하여 한글을 쓰도록 하면서도, 일정기간 한자를 併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公用文書에서 한자병용을 할 수 있는 기한은 정하지 않고 ‘얼마동안 필요한 때’라고 하여 그 판단은 政府에 一任하였다. 이 법률에 의한 한글전용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에 한정된 것이어서, 1948년 이후

1) 이 글은 한글전용法制의 違憲性을 다루는 憲法訴願 사건(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의 口頭辯論(2016. 5. 12.)에서 憲法裁判官들께서 의문을 가졌던 法的 論點을 중심으로 그것을 解明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變론 이후 청구인 측 대리인(金汝熙 변호사)이 헌법재판소에 2016. 7. 21. 제출한 ‘변론 보충의견서’ 중 법적 논점을 다룬 부분을 이후 대리인의 허가를 얻어 조금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969년까지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은 國語 교과서의 기본내용으로 행하여져 왔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부터 정부가 한글전용을 강제적으로 전면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호적(戶籍)과 민원서류를 한글화하였다. 이는 1948년의 한글전용법에 담긴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이전인 1961년에 법원이 조진만 대법원장의 정책결정에 따라 판결문을 비롯한 법원의 모든 문서를 한글전용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도 1948년의 입법취지를 구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1948년의 법률은 공용문서에 한정하여 한글전용을 선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 당시 정부는 거리의 한자 간판에 대해서까지 단속을 벌이는 등 민간에 대해서까지 한글전용을 강요하였다. 더 나아가 1970년 신학기부터는 초등학교의 漢字教育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교과서에서 한자를 강제로 삭제하였다.²⁾ 당시 정부는 國語 교과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고, 따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선정하여 1973년 신학기부터 별도의 漢文 교과에서 기본 한자도 배우지 못한 중학생에게 漢文을 선택적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한국어의 기초를 이루는 한자에 대한 기본교육’으로부터 배제된 채 ‘한국어와는 거리가 있는 한문교육’을 선택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러니 당장의 進學에 필요 없는 漢文知識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은 멀어져 갔다. 1970년 정부가 취한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강제적인 한글전용은 1948년 한글전용법의 규율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법상태가 2005년에 「국어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1948년의 한글전용법이 정식으로 폐지되기까지 지속되었다.

구두변론에서 정부 측 대리인과 참고인은 1990년대에 한글전용이 대세가 된 것이 ‘국민주도의 문자혁명’ 혹은 ‘언어대중이 자연스럽게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

2) 초등학교의 한자교육 폐지와 교과서 한자 삭제는 1968. 10. 25. 「대통령 지시 한글전용 촉진 7개 사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70년 1월 1일부터 행정·입법사법의 모든 문서 뿐 아니라, 민원서류도 한글을 전용하며, 국내에서 한자가 든 서류를 접수하지 말 것. (2) 문교부 안에 한글전용 연구위원회를 두어 69년 전반기 내에 알기 쉬운 표기 방법과 보급 방법을 연구·발전시킬 것. (3) 한글 타자기 개발을 서두르고, 말단 기관까지 보급하여 쓰도록 할 것. (4) 언론·출판계의 한글전용을 적극 권장할 것. (5) 1948년에 제정된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70년 1월 1일부터 전용하게 하고 그 단서는 뺀다. (6)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없앨 것. (7) 고전의 한글 번역을 서두를 것.

이러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68년 12월 「한글전용에 관한 총리훈령 제68호」가 내려졌고, 1969년 9월에는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정령 제251호, 국민학교 한자교육 폐지하라」는 문교부 훈령이 시달되었다.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조판(組版)까지 끝난 다음 학기(1970년 신학기) 교과서를 부랴부랴 한글전용 교과서로 다시 조판해야 했다. 출판사들은 ‘이미 교과서 조판이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조판(組版)하라는 말이냐.’고 항의하였지만, 문교부 관리들은 ‘한자를 뺀 자리에 영어나 다른 것을 넣는 것은 괜찮지만 한자만은 안 된다.’며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이는 일조각(一潮閣)의 한만년(韓萬年) 사장이 1995. 9. 22. 한글과 한자문제(漢字問題) 대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임.

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강제에 의한 인위적인 결과였을 뿐이다. 이렇게 법률적 근거도 없는 한글전용의 강제는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비로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나. 정부의 강제적 한글전용정책을 법률로 승인·확정한 「국어기본법」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는 4가지 용어, 즉 “국어”, “한글”, “어문규범”, “국어능력”의 뜻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제1호에서 ‘국어란 한국어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인 “한자”의 뜻을 밝히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이 漢字混用을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현재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한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한글’이 ‘우리의 고유문자’이듯이, ‘한자’는 2,000년 동안 사용해 온 ‘우리의 전통문자’이다. 이 점을 인정하였다면, 입법자는 반드시 제3호에서 ‘한자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전통문자를 말한다.’라는 규정을 담았어야 했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은 ‘한자’의 개념정의 뜻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제14조에서는 한자를 외국글자와 동등하게 취급해버렸다. 이로써 입법자는 한국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문자 중의 하나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³⁾

또한, “어문규범”의 정의에서도 ‘한글의 표기법’만 언급할 뿐 ‘한자의 어문규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⁴⁾ 나아가 제14조(공문서의 작성)는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

3) 헌법재판소의 선례 중에는 이와 같이 법률에서 규율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그 입법의도가 그 사항을 규율에서 배제하는 데에 있음을 확인한 사례가 있다. 2004년의 ‘정당지구당 폐지 사건’(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을 들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개정법률이 지구당을 폐지시킨 것이냐를 놓고 입법의도가 논란이 되었다. 개정된 「정당법」 제3조(구성)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사광역사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입법의도를 해석하면서, “개정된 정당법 제3조는 중앙당과 시도당을 필수적인 조직으로 요구하면서도 그 하부조직인 지구당과 당연락소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정당법 제3조가 지구당과 당연락소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임의적인 조직으로 하여 그 설치여부를 정당의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가 아니라, 기존의 조직[지구당과 당연락소]을 폐지하고 이후 그 설립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다.

4) 법 제3조 제3호는 語文規範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이라고 하여 한글 맞춤법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한자에 관한 어문규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어문규범은 한자를 배제한 상태에서의 문자생활에 관한 규범을 가리키는 것이다. 국립국어원이 2011. 12. 16. 편찬한 『한국 어문 규정집』은 「한글 맞춤법」(1988년, 문교부 고시 제88-1호), 「표준어 규정」(1988년, 문교부 고시 제88-2호), 「외래어 표기법」(1986년, 문교부 고시 제85-11호/ 1992년, 문화부 고시 제

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이라고 하여, 한자를 괄호 안에 併用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一任하고 있다. 더구나 제14조는 ‘한자’를 ‘외국 글자’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히 드러난다.

또한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교과용 도서의 한국어표기법을 ‘어문규범’에 따르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교과용 도서의 편찬기준**」⁵⁾은 교과용 도서에서 한글전용의 표기법을 원칙으로 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의 고시**⁶⁾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國語 교과가 아닌 漢文 교과에서 한자교

1992-31호/ 1995년,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호/ 2004년,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 2005년,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호), 그리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2000년,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을 담고 있지만, 이들 규정 어디에도 한자에 관한 규범이 담겨 있지 않다.

5) 교육과학기술부가 2009. 12.에 발간한 『국정도서 업무편람』은 「I. 국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공통 사항)」의 “8.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에서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은 최신 어문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른다.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인정 교과서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사무위탁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1. 9.에 발간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도 「II. 공통 편찬상의 유의점」의 “6. 표기와 인용의 정확성”에서 “교과용도서의 표기·표현은 최신 어문규정 및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의미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6) 「초·중등학교 교육과정」(1997. 12. 30.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제정되고 2012. 7. 9.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로 개정된 것). 이 고시는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교과(군)을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2012. 7. 9)	
초등학교 교과(군)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중학교 교과(군)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 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 정보, 환경과 녹색성장,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고등학교 교과(군)	교과는 보통 교과 와 전문 교과 로 한다. ① 보통 교과는 기본 과목 과 일반 과목 , 심화 과목 으로 구분한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 /교양으로 한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로 한다.

육이 이루어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어린 학생들은 ‘한국어의 기초를 이루는 한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봉쇄당하고 있다.

이처럼 「국어기본법」은 제정 이전에 정부에 의해 강제되어 오던 한글전용정책을 그대로 법률로써 승인한 것임이 법률의 내용에서 명백히 증명된다. 요컨대, 「국어기본법」에서의 “국어”란 한국어의 기초인 한자를 배제한 ‘**한글 중심의 국어**’를 상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⁷⁾ 정부도 답변서에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과 그 정신을 이은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기반으로 하는 국어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말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내리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라고 그 입법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⁸⁾ 더 나아가, 정부 측 답변서는 심지어 한자어마저 올바른 우리말이 아니고 “**잘못된 표현**”이니 순우리말(고유어)로 풀어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⁹⁾

다. 한자배제의 言語生活을 강요하는 다른 法令과 施策

漢字排除의 언어생활 강요는 「국어기본법」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 이 기본법을 필두로 해서 여러 法令과 정부의 施策은 한자를 국민의 언어생활에서 강제로 몰아내고 있다.

① 우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屋外廣告物의 표시방법 등에 관해서 大統領令에 위임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2항은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7) 실제로, 「국어기본법」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한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어능력검정시험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표기한 한자어 또는 관용표현인 한자성어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가 전체 85문항 혹은 100문항 중에서 2~3 문제 정도가 나오지만, 한자를 직접 읽고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는 전혀 없다.

8) 정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측 대리인(지평지성) 답변서, 7면.

9) “청구인들은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도 모국어를 정확하게 쓸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맞다. 가장 큰 원인은 한자어가 57%가 넘도록, 지금까지 순우리말(고유어)이 풍부하게 발전되지 못한 데에 있다.** 언어는 발음을 듣고 의미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뜻을 따로 외워야 하는 한자로 된 어휘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지평지성 의견서, 78쪽). 또한, 대학생들이 선거에서의 부동층(浮動層)을 움직이지 않는 층(不動層)으로 정반대로 알고 있다거나 초계함(哨戒艦)의 뜻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들이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하여, 반론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처음부터 오해 소지가 없는 더 쉬운 말을 사용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처음부터 ‘지지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층’, … ‘맛을 보는 배’라고 하면 된다. … ‘부동’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잘못된 표현을 쓴 사람의 책임이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다.**”(지평지성 답변서, 76-77면).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접하는 옥외광고물¹⁰⁾에서도 漢字를 강제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施行令은 한자를 아예 외국문자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위반에 대한 집행은 시정명령,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과태료, 형사처벌의 강제적 수단에 의하고 있다.¹¹⁾

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계약 무효의 효과나 제재는 없지만, 법률은 명백히 약관을 작성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한글 사용을 강제하고 한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③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제1항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그 표시방법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은 표시방법을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

④ 「담배사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담배의 갑포장지와 광고에 표시하여야 하는 흡연 경고문구와 관련해서, 법 시행령 제8조(흡연 경고문구의 표시기준)는 “흡연 경고문구를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 「상업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조(등기 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는 제1항에서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

10) 법률 제2조 제1호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11) 시장 등은 법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법 제10조 제1항), 명령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하거나(법 제10조 제2항) 또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10조의3). 나아가, 법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은 제외)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20조 제1항 제1호).

12) 이를 위반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법 제9조 제1항), 아울러 제5조 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다)을 작성할 때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호와 외국인 성명에 한해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 그밖에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施策을 통해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서 한자를 몰아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법령의 한글화 시책’이다.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고 각 부처에서 입안한 각종의 법령안들을 심사하는 정부기관인 法制處는 2006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2006. 5. 30. 국무회의 보고)을 세우고 ‘법령의 한글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한자로 표기된 법령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¹³⁾ 그리하여 새로 制改正되는 법수는 물론이고 기존에 한자로 표기되어 있던 法令까지도 모두 한글로 바꾸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法制處의 ‘法令 한글화 施策’은 실로 無謀하고 위험한 實驗이다. 법제처가 이 시책을 추진하기 전까지 모든 法典은 헌법과 마찬가지로 漢字混用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法令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법령 한글화 시책’에 따라 그 동안 한자로 표기되어 있던 법률용어들이 법령의 改正을 통해 전부 한글로 교체되고 있다. 法典에서 한자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법률용어는 90퍼센트 이상이 漢字語인데, 그 語源인 한자를 잃어버린다면 法律用語로서의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게 된다.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문을 만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숨겨진 뜻을 지닌 한자어의 법률용어를 무턱대고 한글로 표기한다고 해서 이해가 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글로 표기하면 한자를 전혀 모르는 국민이 그저 읽을 수는 있겠지만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한자를 아는 국민들이나 法律家 또는 새로이 입문하는 法學徒에게 정확한 뜻의 전달을 어렵게 만든다. ‘피의자, 피고인, 공판기일, 기명날인’의 개념을 무턱대고 외우기보다 ‘被疑者, 被告人, 公判期日, 記名捺印’의 한자를 통해 그 뜻을 推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 漢字는 그림문자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뜻이 뚜렷하게 뇌리에 그려져 理解度를 높인다. 한자어의 법률용어를 한글전용으로 변환하더라도 그 뜻의 정확한 전달이 가능한 것은 그 한자어의 어원인 漢字의 이미지와 뜻이 뇌리에서 再生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法典을 찾아보는 것은 대부분 인터넷의 사이트(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혹

13) 법제처 발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4판, 2011, 13면.

은 모바일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인데, 이런 디지털 법전에서는 한글/한자 변환기능이 있어서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클릭 한 번으로 한자표기를 한글표기로 쉽게 전환하여 읽을 수 있다. 그것으로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법규범의 典據가 되는 原典에는 한자어의 原形을 그대로 살려두어야만 ‘의미의 정확한 전달’과 ‘읽기 쉬운 법률문장’의 두 장점을 다 취할 수 있다. ‘법령 한글화 시책’으로 인해 법령의 原典에서 수많은 한자어로 구성된 법률문장이 한글로 고정되어버렸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디지털 법전에서도 그 어원을 확인할 길이 없다.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읽기 쉬운 법령’이라는 名分은 얻었는지 모르나, 그 명분은 디지털 법전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고, 오로지 ‘의미의 정확한 전달’이라는 법률문장의 중요한 기능을 상실시킬 뿐이다. 法文의 이해용이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해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결코 ‘좋은 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국민의 文字選擇權(한국어표기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侵害

허용 및 장려		금지 및 억제	
① 한글 전용 (원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혼용1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전의 표기법)
② 제한적 병용 (예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④ 혼용2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이다. 대한민국의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⑤ 병용1	大韓民國(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민주공화국)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주권)은 國民(국민)에게 있고, 모든 權力(권력)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⑥ 병용2	대한민국은 民主共和國(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權力(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 여섯 가지 표기법에 의한 한국어는 모두 헌법 제1조의 규범내용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동등한 가치**’의 한국어이다. 한글 창제 이후 500년 이상 한국인은 위 여섯 가지 표기법을 **상황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 조선시대에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釋譜詳節』, 『月印釋譜』 외에도 이른바 ‘**諺解**’라는 책들은 모두 한자混用 또는 한자併用이었으며, 古小説은 한글전용으로 쓰인 것이 많았다.¹⁴⁾ 개화기 때의 「독립신문」(1896년 창간)은 한글전용이었으며, 이후 「한겨레신문」(1988년 창간)을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1990년대 후반까지 한자혼용을 사용했다. 그리고 국어기본법 제정(2005년) 직후인 2006년에 법제처가 ‘**법령 한글화 시책**’을 추진하기 전까지 모든 법전은 漢字混用이었으며, 지금도 민법과 형법은 상당 부분 한자혼용으로 되어 있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위 ❸의 표기법(한자혼용체)을 사용하여 국가의 최고규범을 지금까지 표현해 오고 있다.

여기서 어느 표기법이 더 우월하다는 논쟁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위 여섯 가지 표기법에 의한 언어가 똑 같은 한국어로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문자선택권** 내지 **한국어표기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표기법이 국민의 어문생활에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특정의 표기법을 優待하거나 偏愛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기본교육을 통하여 이 모든 표기법을 국민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한국어를 읽고 쓰는 교육**이야말로 국민이 국가로부터 **균등하게 받아야 할 가장 기초적인 교육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모국어를 통해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국어기본법」을 비롯한 심판대상 규정들은 위 표기법 중 ❶❷만을 허용하고 이를 장려하면서, ❸❹❺❻의 표기법은 금지하거나 억제하고 있다. 마치 ❶❷만이 한국어인 양, 또 우월적인 한국어 표기법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전이 표현하고 있는 ❸의 표기법마저 무시 혹은 부정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 결과, 12년의 국민기본교육과정을 마치고도 자기 나라의 헌법규범을 읽을 수조차 없는 국민을 양산해내고 있다. 憲法典의 언어 또한 엄연히 한국어인 이상, 그것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

14) 이해관계인(문화체육관광부장관) 측의 참고인들(권재일/이건범)은 한자혼용체가 개화기 이후 일본의 영향을 받은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엄연히 사실과 다른 거짓된 주장이다. 이 점에 관한 상세는 변론 보충의견서로 제출된 김창진 교수의 의견서(한글전용론의 허구성) 참조.

도록 국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그러한 책무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채, 오히려 한글전용을 강제해 오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우리의 사건과 유사한 미국의 사례로서, 2007년에 알래스카(Alaska) 주 대법원이 내린 *Kritz* 판결¹⁵⁾을 소개한다. 이 판결은 알래스카 주의 「영어 공식어 지정법(Official English Initiative)」의 일부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판결이다. 주 대법원은 이 법이 정부의 모든 공무원이 정부의 기능과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영어만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이 법은 ‘정부공무원의 표현의 자유(free speech rights of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와 그들의 표현을 들어야 하는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free speech rights of the recipients of their speech), 시민들이 정부에 청원할 권리(the rights of citizens to petition their government),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언어로 말할 헌법상의 권리(constitutional rights of each Alaskan to speak in the language of their choice)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조항은 제320조(Sec. 44.12.320)¹⁶⁾의 제1문과 제2문이었다. 제1문은 일종의 개념조항인데, “영어는 모든 정부의 기능과 활동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2문은 공문서에서 영어의 사용을 요구하는 조항인데, “모든 공문서와 기록(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편집되거나 출판되거나 또는 기록되는 모든 문서를 포함)을 작성할 때 영어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알래스카 주 대법원은 위 제320조 제1문에 대해서 위헌선언을 하면서도, 제2문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 왜냐하면 주 대법원은 제2문을 해석해 볼 때, 이 조항은 공문서의 영어본(English version)이 반드시 공표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다중언어본의 공문서(multilingual official documents)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즉, 제2문은 공문서에서 “영어가 사용되어야 한다(the English language shall be used)”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다중언어본의 공문서 작성과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1문은 영어는 공무원들에 의해 사용되는 “그 언어(the language)”라고 규정하

15) *Alaskans for a Common Language v. Kritz*, 170 P.3d 183 (2007).

16) Sec. 44.12.320. Scope. The English language is the language to be used by all public agencies in all government functions and actions. The English language shall be used in the preparation of all official public documents and records, including all documents officially compiled, published or recorded by the government.

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주 대법원은 위 제1문과 제2문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 제1문은 영어의 전용성(專用性; exclusivity of English)을 의도한 것이며 그리고 금지적 기능(prohibitory function)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제2문은 영어 사용되는 이상 공문서에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¹⁷⁾ 주 정부 측은 제1문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여 자유의 제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3. ‘首都 移轉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判示의 의미

헌법재판소는 2004년의 ‘수도 이전 사건’¹⁸⁾에서 “수도를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국명(國名)을 정하는 것, 우리말을 국어(國語)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 영토를 확정하고 국가주권의 소재를 밝히는 것 등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국가의 正體性에 관한 기본적 憲法事項에 해당한다.’는 言明에 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의 관점은 이 언명이 先例 혹은 判例로서 拘束力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우리말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문자를 변경하는 것이 국가의 正體性에 관한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의 관점과 관련해서 보면, 위 언명은 구속력 있는 判例라기보다 傍論에 해당한다. 주지하다시피, 구속력 있는 판례 혹은 선례란 ‘결론(主文)에 이르는 주된 이유’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傍論이란 事案의 쟁점과 관계없이 결가지로 덧붙인 논의[傍論의 ‘傍’은 ‘결가지 방’]을 가리킨다. 이러한 방론은 구속력 있는 판례와 구별된다. 물론 방론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보다 중요한 관점은 둘째의 관점이다. 위 헌법재판소의 判示가 갖는 의의는 ‘우리말인

17) 170 P.3d at 197. we construe the second sentence of AS 44.12.320 to mean that multilingual *official* documents are not prohibited so long as an English version of the document is published. The second sentence states that “[t]he English language shall be used” in official documents. The first sentence, in contrast, states that English is “the language” to be used. We take this to mean that the first sentence of AS 44.12.320 intends an exclusivity of English and has a prohibitory function. The second sentence, in contrast, has a permissive aspect, allowing the use of non-English languages in documents so long as English is also used.

18) 헌재 2004. 10. 21. 2004헌마554등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7(위헌) : 1(위헌) : 1(각하)].

한국어를 변경하거나 혹은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수도를 변경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본적 헌법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글을 한글’이라고 例示하였지만, 한국인이 2천 년 동안 사용해왔고 한국어의 핵심요소이며 지금도 국민이 사용하고 또 헌법규범을 표기하고 있는 ‘한자’를 우리글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시는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문자(한글과 한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기본적 헌법사항이고 따라서 법률로써 이를 변경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이해해야 한다.

4. 文化國家 原理에 대한 기존 헌법재판소의 解釋論

헌법재판소는 일찍이 2004년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극장시설금지 사건’¹⁹⁾에서 국가가 文化國家의 原理를 실현하는 방법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즉, “문화국가원리는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과제 또는 책임을 통하여 실현되는바, 국가의 문화정책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 국가절대주의사상의 국가관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국가의 적극적인 문화간섭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국가가 어떤 문화현상에 대하여도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 부당의 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²⁰⁾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국가원리의 실현방법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단순히 한글문화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자문화를 억압하고 배척함으로써 그 헌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은 국민의 어문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한국어표기법이 수 백 년 동안 존재하여 왔고 지금도 국민들이 상황에 따라 이를 사용해 오고 있음에도, 특정의 표기법(한글전용)만을 공문서작성에 있어서 그리고 국민의 기본교육과정에서 강제한 채 다른 표기법(한자혼용 및 한자병용)의 사용을 금지 내지 억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기초적인 한국어교육과정인 국어 교과에서 한자교육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가 고유어와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고 한자어는 한자를 기초로 성립되

19) 헌재 2004. 5. 27. 2003헌가1등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9(위헌적용중지명령 헌법불합치) : 이].

20) 판례집 16-1, 670, 679.

어 있다는 엄연한 ‘문화적 진실’을 부정하는 反文化的인 方法論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 같은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문화적 억압은 ‘傳統文化的 繼承·發展’을 문화국가적 과제로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9조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의 ‘전통사찰 소유권변동 사건’²¹⁾에서 제9조의 국가적 과제가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施惠가 아니라 헌법상의 義務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러한 문화국가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 「전통사찰보존법」상의 讓渡許可條項을 7 : 2로 위헌적 법률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양도허가조항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傳統寺刹이 소유권변동에 의하여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적 소유인 전통사찰의 境內地와 부속 건물을 主持가 타인에게 讓渡할 때에는 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의 許可를 받게 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양도는 無效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公用收用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에 대해서는 달리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민족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과제를 불충분하게 입법화한 讓渡許可條項에 대해 憲法不합致**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위헌논거는 **전통문화유산인 한자문화의 계승발전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의 위헌성을 그대로 확인해 준다.

“전통사찰의 경내지 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소유권변동이 전통사찰을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양도허가조항)은 다른 소유권변동원인과 달리 公用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즉 ‘민족문화유산의 존속’이라는 헌법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실효성 있게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公用수용으로 인한 소유권변동에 있어서는 관할 국가기관 등이 전통사찰을 실효성 있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바, 이는 公用수용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변동의 경우와 公用수용에 의한 소유권변동의 경우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헌법 제23조를 이유로 하여 헌법 제9조의 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족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국가의 단순한 은혜적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이므로, 일단 관할 국가기관에 의하여 민족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통

21) 헌재 2003. 1. 30. 2001헌바64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7(헌법불합치) : 2(합헌)].

사찰의 경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이를 최대한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헌법 제9조 등의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 결국, 전통사찰 경내지 등에 관한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제3자적 국가기관에 의한 공용수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용인하는 관할 국가기관의 의사표시를 소유권변동의 효력요건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²²⁾

5. 公文書의 의미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문서’의 의미에 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²³⁾」 제3조 제1호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청구서나 준비서면, 참고인 의견서 모두 公文書에 해당한다.

6.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대한 새로운 분석연구

정부(문화관광체육부장관) 측 대리인은 口頭辯論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²⁴⁾에서 한국의 15세 청소년이 독해력 부문에서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하였고, 국제성인역량평가(PIACC)에서 16~24세가 22개 회원국 중 3위를 차지하였으나 55~65세는 20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하면서, 이른바 한글세대의 독해력은 매우 높은 반면에 한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아는 성인세대(55~65세)는 오히려 최하위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한자 공부를 할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2) 판례집 15-1, 48, 61-63.

23) 이 규정의 명칭은 2016. 4. 26. 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의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4)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 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 대상 학생들을 무선 標集하여, 2시간의 지필 검사로 평가가 시행된다.

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결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한국의 15세 청소년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된 원인이 '私教育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어놓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숙 선임 연구위원은 “PISA 2012 상위국 문제 해결력 성취에 대한 교육 변인 영향력 분석”이라는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에서 “PISA 문제 해결력 상위권 4개국(한국·핀란드·싱가포르·일본)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만 私교육과 점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국은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²⁵⁾ 2012년 PISA에 응시한 한국 학생의 私教育 시간은 주당 평균 4.94시간으로 핀란드(11분)·일본(40분)보다 훨씬 많았다고 한다. 싱가포르·일본·핀란드는 모두 학교 수업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한국은 학교 수업이 성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핀란드·싱가포르·일본은 공교육이 살아 있어 PISA 고득점에 영향을 끼친 반면 한국은 私教育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사교육의 거품이 빠지는 成人의 경우에 역량이 뚝 떨어지는 것은 사교육과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성인이 되어서도 문제해결력이 계속 OECD 평균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²⁶⁾

요컨대, 정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측 대리인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들어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한글세대의 文解力이 매우 낮다는 분석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2003년에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文解力)에 관한 국제 비교를 행한 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 成人의 문해력은 높은 高學歷의 성인 비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이며, 특히 文書文解 영역에서는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²⁷⁾ 이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4분의 3(75.8%)은 文解力이 1~2단계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²⁸⁾ 한국 성인의 고급문서 解讀力(4~5단계)은 선두그룹인 스칸디나비아 국

25) 이 발표문은 2016. 3. 11.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하는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 기념 국제 교육 콘퍼런스」에서 발표되었다.

26) 김성모, 「PISA 우등 비결보니... 韓 사교육·日 공교육」(조선일보 2016. 3. 11.자)에서 인용함.

27) 이희수박현장이세정, “한국 성인의 문해실태와 OECD 국제비교 연구”, 비교교육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비교교육학회, 2003, 193면.

28) 이 연구에서는 文解力 1단계를 ‘의약품의 설명에서 나타난 정보로부터 아이에게 투약할 약의 양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2단계는 ‘일상적인 문해능력이 요구되는 일에 가까스로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운 요구에 부딪쳤을 때는 문해능력이 부족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3단계는 ‘복잡한 일과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 높은 문해 수준에서 요구되는 여러 정보를 통합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4·5단계는 ‘고도의 정보처리 및 기술 능력 구사’로 규정하였다.

가의 10분의 1 수준이다(스웨덴 35.5%, 노르웨이 29.4%, 덴마크 25.4%, 핀란드 25.1%). 위 연구에서는 국가별 학력별 文解力을 조사하였는데, 이 부문에서도 한국은 23개국 중 최저 수준이다. 中卒者의 문해력은 23개국 중 18등, 高卒者는 23개국 중 22등, 大卒者는 23개국 중 23등으로 나타났다.

7. 私教育에 내몰린 한자교육의 弊害 : ‘階級の 벽’이 된 漢字

公教育에서 정부의 억압적인 한자배척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言語大衆인 국민은 그에 저항하여 사교육비를 들여서 스스로 한자 공부를 해 오고 있다. 누구보다 부모들은 초등학생의 자녀들에게 漢字教育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²⁹⁾ 민간기관들이 운영하는 漢字能力檢定試驗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應試하고 있다. 이제 중상류층에서 漢字는 英語와 마찬가지로 자녀 早期教育의 필수항목이 되어 있다.³⁰⁾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로 私教育을 받을 수 없는 家庭의 자녀들에게 한자는 더욱 두터운 ‘階級の 벽’이 되어가고 있다.³¹⁾ 러시아인으로서 한국으로 歸化한 朴露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는 《한겨레21》에 기고한 「한자만 나오면 ‘자이분열」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글과 한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二律背反的 시각을 ‘自我分裂’ 증상으로 진단하면서, 한자교육이 공교육체계에서 밀려남에 따라 貧富隔差가 한자 실력의 차이로 나타나고, 그리하여 ‘한자가 문화 자본으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자교육을 의 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³²⁾

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 11. 학부모와 교사 5,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3%(학부모의 89.1%, 교사의 77.3%)가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에 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한자교육을 넣어야 한다.’는 결론의 연구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2009. 11) 참조.

30) 왜 부모들이 자녀의 조기교육에 한자를 포함시키는 것일까? 그것은 한자교육이 어린이의 뇌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연구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은 한자의 早期教育이 天才를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자가 이동을 天才로 만든다’는 石井 勳 박사의 주장은 동경 의과대학의 時實利彦(도끼자네 도사히코) 교수의 腦生理學 실험 결과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石井 勳, “石井式 한자교육혁명”, 『漢字教育 立國』(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편, 2012), 83면.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腦科學 분야의 권위자인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 소장인 趙長熙 석학교수가 한자가 갖는 綴字와 形態素(morpheme)의 특성이 학습 및 認知記憶(recognition memory)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뇌과학적으로 실증하였다. 趙長熙, “뇌과학으로 본 漢字의 특성과 形態素 특성”, 傳統文化 제34호(2012년 가을호), 전통문화연구회, 5면.

31) 김학용, 「부유층 자녀의 漢字는 지도자의 길」(디트뉴스24 2016. 5. 13.자)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393901>

8. 漢字, 21세기 情報時代에도 적합한 文字

정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측 대리인과 참고인은, 한글이야말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우수한 문자이며, 한자는 落後된 문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자가 落後된 문자로서 정보화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을 왜곡시키는 편향된 주장이다. 이 관점은 과거 19세기 서양이 植民地主義와 고자세로 중국과 중국어를 바라보던 관점이다.³³⁾

그러나 1985년에 영국의 언어학자 샘슨은 ‘한자 낙후론’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를 반박하였으며, 1987년 영국의 인류학자 잭 구디는 “우리는 서방이 갖고 있는 독특함을 너무 강조했다”고 하면서 중국어의 한자 쓰기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취소하였다. 중국어는 21세기에도 강력하며 디지털시대에도 발전속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언어 중 하나이다. 중국은 ‘지능입력법 기술’을 보급하는 최초의 나라이며 현재 정보기술의 거두이다. 한자는 미디어 발전의 장애요소가 아니며 스마트폰 산업발전의 방해 요소도 결코 아니다.³⁴⁾

32) 박노자, 「한자만 나오면 ‘자이분열」 《한겨레21》제631호 (2006. 10. 20). 또한 그는 《한겨레21》에 기고한 「한자를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글에서, 한자어는 유럽 언어들에서 보기 드문 의미의 압축력을 지닌 ‘지혜의 건전지’라고 평가하면서, 언어란 ‘섞임’의 토양에서 자라는 것인데 순우리말 고집은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 때 나는 이런 압축적 표현력을 가진 한중일의 언어가 끝없이 부럽기만 했다. ... 나는 한국어 속의 한자어를 익혔기에 일본어를 따로 배울 일도 없이 ‘요야쿠가 무료테스’를 들으면 예약이 무료인 줄로 당장 눈치챌 수 있다. 과연 ‘도종 한국인’들도 한자를 ‘국어 속의 이질적인 요소’ ‘남의 글’로 배척하기만 해야 하는가? 국내 인구보다 30배나 많은 이웃 나라들의 인구에게 통하는 ‘코드’가 이미 우리 언어 속에 내재돼 있다는 것을 굳이 나쁘게만 볼 일인가? 외솔 최현배 선생 등 언어국수주의자들이 한자를 ‘남의 글’로 규정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고방식이다. ... 진정한 ‘남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 사용을 굳이 그렇게까지 꺼릴 이유가 무엇인가? ... 단어들에 과연 꼭 명확한 ‘국적’이 있는가? ... ‘남의 말’이 만약 모두 ‘침투’라면 바깥 세계에서도 ‘태권도’와 같은 한국어 차용어를 서둘러 그쪽의 ‘순 우리말’로 ‘순화’해야 하는가? 음과 양의 합침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두 사람의 합침이 가족을 만들고 수많은 방언들의 영향들의 합침과 스며들이 언어를 만들어 발전시킨다. 사람이 외부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성장하듯 언어도 외부와의 ‘섞임’을 토양 삼아 자란다. 외부와의 접촉을 지나치게 꺼리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흔히 ‘대인기피증’이라고 진단한다. 솔직히 말하면, ‘순 우리말’을 고집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떠오르는 표현이다.”

박노자, 「한자를 포기할 수 있을까」 《한겨레21》제630호 (2006. 10. 13)에서 인용.

33) 19세기 東邦主義(orientalism)의 관점에 선 헤겔은 ‘한자는 과학 진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라고 주장했었다.

34) 「美 언론 ‘중국어는 낙후, 현대 기술과 부적합...이는 잘못된 의견」(머니투데이 2016. 5. 19.자)에서 인용. 최근 한국에서도 ‘한글→漢字 자동변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한자로(漢字路)”라는 프로그램은 문서 안에 한글로 표시된 漢字語에 대해 문장 및 문서 단위로 한꺼번에 한글을 한자로 자동변환해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동양고전정보화연구소(소장 金炫,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교수)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와 워드프로세서 등에 탑재되어 자동 변환을 지원해 주고 있다.

9. 結論

정부에 의한 35년간의 강제적인 한글전용정책과 그것을 법률로써 승인하고 있는 2005년의 「국어기본법」으로 인해, 한글 창제 이후 500여 년 동안 존속되어 온 국민의 文字選擇權 즉 한국어표기법에 관한 자기결정권 및 초·중등교육과정 학생들의 한자교육을 통한 인격발현의 권리가 박탈당한 상태에서 한국어는 서서히 반쪽짜리 언어로 전락해가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자기나라 국민의 母國語의 기초를 이루는 文字의 사용을 人爲的으로 禁止 혹은 抑壓하는 反文化的이고 전통문화파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실로 의문이다.

지난 수 십 년간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의 기초를 이루는 한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2002년에는 전직 교육부장관 23인 전원이, 2009년에는 전직 국무총리 20인 전원이 청와대에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한자교육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지금까지 모두 115건의 청원서·건의서·성명서가 제출되고 발표되었다. (사)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한자교육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2016년 현재 약 450만 명의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뜨거운 국민의 목소리에 二律背反的인 태도를 보이면서 쉽게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2005년 당시 한쪽에 치우친 정부와 국회는 「국어기본법」을 통해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놓았다.

이제 국민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길을 찾아 헌법재판소에 문을 두드린 것이다.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智慧의 도구를 활용하게 하여 창조적 문화를 꽃피우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박탈하여 자신의 母國語조차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국민으로 전락시킬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서 있다. 1443년에 세종대왕이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해내어 韓國語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했던 그 심정으로, 편협한 한글純血主義와 왜곡된 言語民族主義에 빠져 절름발이가 되어가는 韓國語를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소망한다.